

주요국의 자유무역협정상의 직접운송원칙 조사

2013. 9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정 재 호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정 아 전문연구원

김 미 영 관세사

목 차

I. 서론	7
II. 직접운송원칙	10
1. 의의	10
가. 개관	10
나. 직접운송원칙 규정의 유형	11
2. 국제협약에서의 직접운송원칙	12
가.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K(원산지)	12
나. WCO 위원회의 특혜원산지 규정 비교 연구(the Comparative Study on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13
III. 우리나라의 직접운송원칙 규정	22
1. 관련 법령	22
가. FTA상 직접운송원칙	23
나. 국내법상 직접운송원칙	35
2. 해석기준 및 사례	37
가. 해석기준	37
나. 사례	39
IV. 주요국의 직접운송원칙 관련 규정	45
1. 미국	45
가. FTA상 직접운송원칙	45
나. 국내법상 직접운송원칙	49
다. 해석기준 및 사례	56

2. EU	58
가. FTA상 직접운송원칙	59
나. EU법상 직접운송원칙	69
3. 중국	70
가. FTA상 직접운송원칙	70
나. 국내법상 직접운송원칙	74
4. 일본	75
가. FTA상 직접운송원칙	76
나. 국내법상 직접운송원칙	79
V. 국제비교 및 시사점	82
1. 국제비교	82
가. FTA 협정 현황	82
나. 각국의 FTA상 직접운송원칙	83
다. 각국의 국내법상 직접운송원칙 비교	86
라. 각국의 FTA별 직접운송원칙 비교	89
2. 시사점	92
가. 주요국의 FTA상 직접운송원칙의 특징	92
나. 주요국의 국내법상 직접운송원칙의 특징	93
다. FTA 직접운송원칙 규정의 일관성	93
라. 우리나라와 미국의 직접운송원칙 적용 사례 정리	94
마. 탁송화물 분리예 대한 직접운송원칙의 적용	96
참고문헌	98

표 목 차

〈표 II -1〉 특혜원산지 규정 공통 항목.....	14
〈표 II -2〉 EU와 NAFTA 지리적 영역 비교.....	18
〈표 II -3〉 직접운송의 경우.....	19
〈표 II -4〉 EURO-MED Origin Protocols와 NAFTA 직접운송원칙 규정 조항.....	21
〈표 III -1〉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22
〈표 III -2〉 협정별 직접운송원칙 비교.....	24
〈표 III -3〉 한-싱가포르 FTA, 한-ASEAN FTA, 한-인도 CEPA, 한-페루 FTA 직접운송원칙 비교.....	28
〈표 III -4〉 한-EFTA FTA, 한-EU FTA 및 한-터키 FTA 직접운송원칙 비교.....	33
〈표 III -5〉 한-미 FTA, 한-칠레 FTA 직접운송원칙 비교.....	34
〈표 III -6〉 FTA 관세특례법 직접운송원칙 규정.....	36
〈표 IV -1〉 미국의 협정별 국내법 규정.....	51
〈표 IV -2〉 미국의 협정별 직접운송원칙 비교.....	55
〈표 IV -3〉 Pan-Euro 원산지 규정의 구성체계.....	61
〈표 IV -4〉 EU-멕시코 FTA 원산지 규정의 구성체계.....	64
〈표 IV -5〉 EU-칠레 FTA 원산지 규정의 구성체계.....	67
〈표 IV -6〉 한국-EU FTA의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구성체계.....	68
〈표 V -1〉 각국의 FTA 협정 현황.....	82
〈표 V -2〉 각국의 FTA상 원산지 규정과 직접운송원칙의 구성.....	83
〈표 V -3〉 각국의 주요 FTA의 직접운송원칙 내용.....	85

〈표 V-4〉 각국의 국내법상 원산지 규정.....	87
〈표 V-5〉 각국의 국내법상 직접운송원칙 비교.....	89
〈표 V-6〉 각국의 FTA별 직접운송원칙 비교.....	91

I. 서론

-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의 특혜원산지 규정은 체약당사국 간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규칙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은 특혜 관세가 부여됨
 - 특혜원산지 규정은 WTO MFN 원칙¹⁾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방적 혹은 쌍무적으로 관세상의 특혜대우를 공여하기 위해 사용됨²⁾
- FTA 특혜원산지 규정은 일반 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구분되며, 직접운송원칙은 원산지 결정을 위한 선결 요건임³⁾
 - 일반원산지 규정은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 규정으로서 협정 체계상 원산지 규정의 본문에서 규정
 - 품목별 기준은 해당 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각각의 규칙으로 '별표'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
- 직접운송원칙은 수입국에 도착한 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출된 물품과 동일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으로, FTA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 물품이 비원산지 물품과 운송 도중에 조작 또는 혼재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 이는 실질적으로는 '원산지 규정'이 아니라 운송 도중에 원산지 물품의 우회 또는 특혜 남용을 방지하도록 행정적 절차를 요구하는 원칙으로도 볼 수 있음

1)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 회원국은 GATT 제2조에 따라 MFN(Most Favored Nation: 최혜국대우) 원칙을 준수하여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공급자를 다른 어느 나라(비회원국 포함)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2) 정순태, 「FTA 특혜원산지 규정의 문제점과 조화」, 2012, p. 95

3) 기획재정부, 『FTA활용 실무매뉴얼』, 2011, p. 24

- 직접운송원칙은 경제권역별로 약간 상이하게 규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국 행정의 상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한-EU FTA, 한-미 FTA의 발효와 함께 우리나라의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행착오 및 원산지 검증 사례가 늘어가고 있음
- 이를 잘못 적용하여 제3국 경유 물품에 특혜원산지 혜택을 부여할 경우 여러 편법들이 난무하여 FTA의 취지를 저해할 수 있음
 - FTA로 인한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입 물품가격의 하락을 상쇄하는 운송비용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음
- 특히, 한-EU FTA 관세위원회에서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물품에 대해 직접운송 규정을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협정문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이는 한-EU FTA에서 규정한 제3국에서의 공정 범위가 국제무역거래를 오히려 저해할 우려가 있고, 비슷한 경제권인 EFTA의 직접운송 규정보다 엄격하다는 점이 발단이 되었음
- 한편, 우리나라가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대국은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하여 21개국이며, 10건의 FTA가 협상 준비 또는 연구 중에 있음
-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향후 우리나라가 체결하게 될 FTA 직접운송원칙의 방향성 마련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주요국들의 FTA와 국내법상 직접운송 규정에 대한 자료들을 조사하고 정리해보고자 함
- 해외 주요국의 FTA 직접운송원칙 규정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음
 - 제Ⅱ장에서는 개정교토협약 및 WCO 관세위원회의 직접운송원칙에 관한 내용을 정리함
 - 제Ⅲ장에서 우리나라와 체결하여 발효된 FTA 직접운송원칙 규정의 내용을 정리하고, 해석 사례를 살펴봄

- 제Ⅳ장에서 미국, EU, 중국 및 일본의 FTA와 국내법에서 규정한 직접운송원칙의 내용을 조사함
-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직접운송 규정의 법률체계와 내용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Ⅱ. 직접운송원칙

1. 의의

가. 개관

- ☐ 직접운송 요건은 특혜원산지 물품이라 하더라도 체약당사국 간 직접 운송되지 않으면 원산지가 부인되는 것을 규정함
- ☐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동일성 여부 등이 수입국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규정임
 - 제3국은 협정 또는 국내법령에 의해 수입국에서 조사권한이 없으며, 이에 따라 제3국에서 내수 통관되는 경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원산지가 부인됨
- ☐ 다만, 운송 목적으로 환적되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보아 당해 원산지를 인정함
 -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함(「관세법」 제2조 제14호)⁴⁾
 - 지리적, 운송상의 이유로 수출국에서 목적국으로 직접 운송하지 않고 제3국을 거쳐 운송하는 것으로 상품보존 작업 이외의 가공이 없을 것⁵⁾

4)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2조(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면제) 제5호에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대상으로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화물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 보세운송, 환적의 개념은 경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

5)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원산지확인기준등에관한규칙」 제8조 직접운송의 원칙 제2항, 직접 운송된 물품의 범위로 지리적 이유 또는 전적으로 운송상의 이유로 경유한 것, 경유국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것 및 경유국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그 밖의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외의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않은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직접운송 규정은 원산지 충족요건 확인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이 아니라 실체적인 규정이므로 동 원칙을 위반하면 물품의 원산지 자체가 부인됨

나. 직접운송원칙 규정의 유형

- 직접운송 규정은 크게 ‘유럽형’과 보다 완화된 ‘미주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유럽형’은 수출당사국에서 발송된 물품이 비체약당사국을 거치지 않고 수입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될 것을 원칙으로 함
 - 환적 등 운송 목적으로 비체약당사국을 경유하거나 비체약당사국에서 별도의 작업을 거치지 않은 경우 또한 직접운송으로 간주함
- 다만, 비체약당사국에서 환적할 경우 관세당국의 감독하에 하역, 재선적 또는 물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이하 ‘환적 관련 작업’) 이외의 가공 또는 작업을 제한함
- 또한 비체약당사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하는 환적 관련 작업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직접운송원칙을 인정함
 - 협정에 따라 환적 관련 작업 입증서류를 명시하기도 함
- ‘유럽형’은 목적국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수출국에서 물품이 발송될 경우 비체약당사국에서의 환적 관련 작업에 대한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원산지 특혜를 인정하지 않음⁶⁾
- ‘미주형’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하지 않고 ‘환적’ 규정을 두고 있음
- 따라서 수출 당시 수입당사국을 최종 목적지로 하여 발송할 필요가 없고, 수입자가 정

6) 최영훈, 「한-미 FTA 이해 - 직접운송원칙(1)」, 주간 『관세무역』 통권번호 제1531호, 2012. 11.

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당사국에서 수출한 이후 비당사국 보세구역에 장치하면서 구매자와 계약하여 수입당사국으로 운송한 경우에도 특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형’과 큰 차이가 있음⁷⁾

- 다만, 비체약당사국에서 환적할 경우 관세당국의 통제하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물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 이외의 어떤 가공 또는 작업을 제한한다는 점은 공통으로 규정함

2. 국제협약에서의 직접운송원칙

- 특혜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개정교토협약과 WCO Council(세계관세기구 위원회)에서 직접운송 규정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살펴봄

가.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K(원산지)

- 개정교토협약은 WTO 제1차 각료회의를 통해,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인 일명 ‘교토협약’(1973)의 구속성을 강화하도록 개정된 협약
 - 관세장벽, 수량제한 등 전통적인 무역장벽이 축소되는 반면에 통관 등 세관절차의 복잡 및 부조화로 인한 무역장애가 상존하여 현대의 정보기술을 반영하기 위함
- 가입국이 필수적으로 수락하여야 하는 내용을 일반부속서로 편입하고 선택적으로 수락 가능한 부분은 특별부속서로 편입
-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K 원산지(Rules of Origin) 제12조에 직접운송원칙(Direct Transport Rule)에 대한 권고관행을 규정⁸⁾

7) 최영훈, 「한-미 FTA 이해 - 직접운송원칙(1)」, 주간 『관세무역』 통권번호 제1531호, 2012. 11.

8) 최영훈, 「한-미 FTA 이해 - 직접운송원칙(1)」, 주간 『관세무역』 통권번호 제1531호, 2012. 11.

- 직접운송 규정을 채택할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사유로 지리적 이유(예: 내륙국가)와 제3국 세관의 통제하에 있는 경우를 허용⁹⁾
 - 제3국 관세당국 통제하에 있는 경우는 박람회 참가 목적의 전시용 물품 또는 보세창고에 장치하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음

나. WCO 위원회의 특혜원산지 규정 비교 연구(the Comparative Study on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 본 연구는 2007년 세계관세기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산지 실행 방안(Origin Action Plan)의 일환으로 원산지 규정 전반에 대한 이해의 강화를 목적으로 함
 -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특정 규정의 해석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받아 작성, WCO 회원국이 운영 중인 원산지 규정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EU의 「EURO-MED Origin Protocols」와 미주의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이하 'NAFTA')의 특혜원산지 규정을 비교, 분석함
 - 향후 협정과 항목을 추가하여 연구를 보충할 예정
- 여러 특혜원산지 규정 가운데 반복되는 주제들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음

http://www.wcoomd.org/en/topics/facilitation/instrument-and-tools/conventions/pf_revised_kyoto_conv/kyoto_new/spank.aspx

9) Specific Annex K Chapter 1 Rules of origin Direct transport rule

12. Recommended Practice

Where provisions requiring the direct transport of goods from the country of origin are laid down, derogations therefrom should be allowed, in particular for geographical reasons (for example, in the case of landlocked countries) and in the case of goods which remain under Customs control in third countries (for example, in the case of goods displayed at fairs or exhibitions or placed in Customs warehouses).

〈표 II-1〉 특혜원산지 규정 공통 항목

대분류	규정
일반/포괄 원산지 규정: 영역 요건	영역원칙
	영역원칙의 예외
	전시물품
	직접운송원칙
원산지증명 적용 절차	원산지증명서/원산지 입증서류
	면제/원산지 증명의 예외/원산지증명서
	원산지 검증/원산지 입증서류에 관한 검증
	분쟁
행정협력	행정협력/상호지원
	실무진 및 관세위원회
일반/포괄 원산지 규정	일반/포괄 원산지 규정
	원산지 결정 근거
	HS 및 관세평가협약의 적용/해석 및 적용
	원산지 결정의 일반 요건
	정의
	흡수원칙/중간재
	불충분공정/최소공정/불인정공정
	중립재/간접재료
	누적조항
	환급
	소매포장 및 포장용기
	부속품, 부품 및 공구
	세트물품
	역내부가가치기준/가치누적기준
	대체재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조항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경: “원산지 물품”의 정의/“충분공정”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NAFTA 부속서 401)/공정 목록(유럽 기준 부속서 II)
	NAFTA 부속서 401의 주해서/유럽원산지모델 부속서 II의 해설서
	“실질적 변경”을 결정하는 다른 방법-세번변경기준
기타/최종규정	교토협약-“실질적 변경”을 결정하는 방법-부가가치기준
	교토협약-“실질적 변경”을 결정하는 방법-특정공정기준
	사전심사/원산지 정보의 구속력
	검토 및 원산지 결정에 대한 불복청구
	벌칙
	비밀유지

자료: WCO,

<http://www.wcoomd.org/en/topics/origin/instrument-and-tools/comparative-study-on-preferential-rules-of-origin/specific-topics/generic-topics-commonly-found-in-preferential-origin-legislation.aspx>

- 이 가운데 영역요건(Territorial Requirements)은 ‘영역원칙(Principle of Territoriality)’, ‘영역원칙의 예외(Derogation of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전시물품(Exhibitions)’ 및 ‘직접운송원칙(Direct Transport Rule)’의 규정들로 구성됨

1) 영역원칙

- 영역원칙이란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서, 역내에서(in the free trade zone) 생산 공정이 자유롭게 수행되어야 하고 원산지 조건이 이행되어야 함을 의미
- 역외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조작은 당해 물품 또는 자유무역지대에서 어떤 공정을 통해 원산지 자격을 얻은 물품의 특혜원산지 자격 상실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역외에서의 중간재 수출은 당해 물품이 역내에서 이미 수행된 제조공정으로 얻은 원산지 자격 상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
- 따라서 영역원칙은 특혜원산지 자격을 위한 전제조건임
- 제조과정 중간에 역외국가로 수출된 물품은 재수입될 때 전체를 비원산지 물품으로 보아야 함
 - 수출 이전에 역내에서 최초에 행해진 제조공정의 일부는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이를 위하여 원산지를 결정짓는 역내에서의 생산 공정을 관리하여 역내 및 역외에서의 상이한 생산 단계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여러 당사국에서의 생산 공정을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지원을 받아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음

- 모든 FTA는 지리적 제한을 두어 역내에서 ‘완전히 획득(wholly obtained)’될 것을 요건으로 하거나 ‘실질적 변경(substantial transformation)’ 또는 ‘충분공정(sufficient manufacturing or processing)’을 거칠 것을 요건으로 함
- 역내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방해받지 않고 생산 공정이 이루어져야 함
 - 역외로 수출된 물품이 역내로 재수입된 경우 100% 비원산지 물품이며 수출 이전에 역내에서 제조 또는 공정의 일부가 이루어졌더라도 원산지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음
- 이 원칙은 거의 모든 협정에서 찾을 수 있으며, EU 원산지 규정에는 이를 상세히 다루는 반면, NAFTA에서는 원산지 요건을 규정하는 Article 401에 간단히 언급만 하고 있음

2) 영역원칙의 예외

- 그러나 일부 원산지 규정에는 일정한 상황에서 역외에서의 제한된 공정을 허용하는 예외를 두고 있음
 - 이러한 예외규정은 제50부 내지 제63부의 의류 물품에 적용될 수 없음
- 조건은 관세당국에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수입된 물품이라는 것, 물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공정 이외에는 추가 공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함
 - 재수입될 때 관세당국에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재수입되는 물품이 역외를 벗어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인 경우
 - 역외에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어떠한 작업이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또한 제한된 작업 또는 공정은 역외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허용될 수 있음
 - 역내에서 완전 획득 또는 수출 이전에 충분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재수입된 물품이 이전에 역외에서 작업 또는 공정을 거친 후 수출된 물품과 동일함

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역외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최종 물품의 EXW 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European Origin Models Article 12에는 Title II에 규정된 원산지 자격을 얻기 위한 요건인 ‘완전 획득’ 또는 ‘충분공정’ 요건을 명시하고 있음

○ 반대로 계약당사국의 영역을 벗어나면 원산지 자격은 상실됨을 의미함

○ 다만,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역외공정계약(outward processing arrangement)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NAFTA는 영역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음

○ 이는 NAFTA 외의 국가로 수출되어 재수입된 물품은 ‘비원산지 물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임

3) 전시물품

□ ‘전시물품’ 조항은 제3국을 경유하는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직접운송원칙의 예외를 적용해주는 조항임

4) 직접운송원칙

□ 직접운송원칙의 규정은 아래와 같이 지리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유럽의 경우 EU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직접운송에 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 서반구의 경우는 당사국 간에 지리적으로 해상운송이 필요하지 않음

〈표 Ⅱ-2〉 EU와 NAFTA 지리적 영역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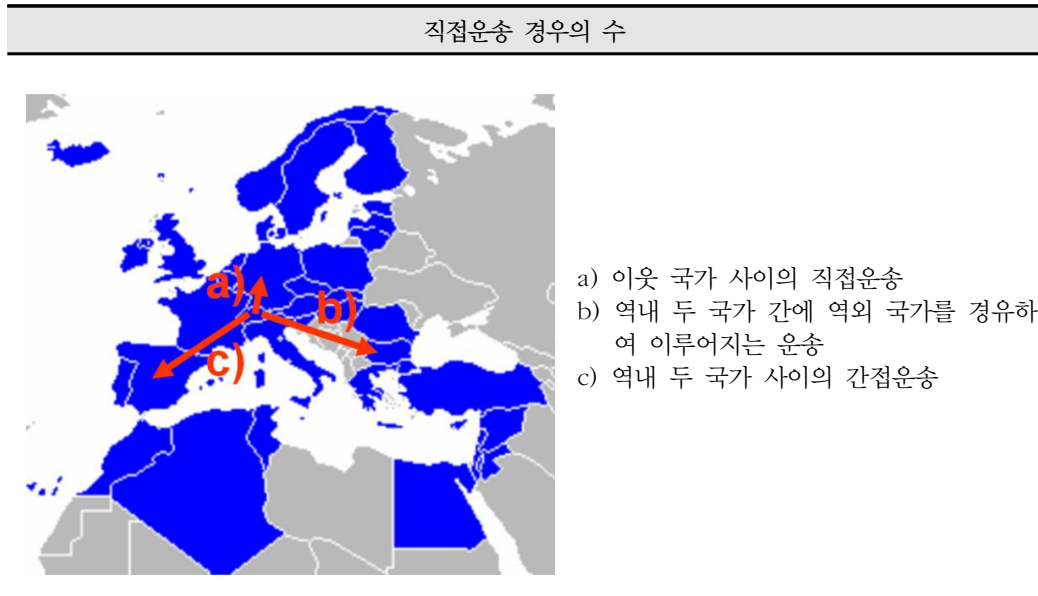
European Union	NAFTA
	

자료: WCO,
<http://www.wcoomd.org/en/topics/origin/instrument-and-tools/comparative-study-on-preferential-rules-of-origin/specific-topics/study-topics/tsp.aspx>

- 일반적으로 EU 영역 내에서 운송은 a) 이웃 국가 사이의 직접운송, c) 역내 두 국가 사이의 간접운송 및 b) 역내 두 국가 간에 역외 국가를 경유하여 이루어지는 운송, 세 경우로 이루어질 수 있음
 - a)와 c)의 경우는 운송이 역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산지 요건의 오류가 적용될 소지가 적음

- b)의 경우는 역외국가에서의 환적에 대한 하나의 운송서류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출하고, 환적 관련 작업이 당해 국가의 관세당국의 감독하에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함
 - 환적 관련 작업: 관세당국의 감독하에 하역, 재선적 또는 물품의 상태를 보존하기 위한 작업

〈표 II-3〉 직접운송의 경우



자료: WCO,
<http://www.wcoomd.org/en/topics/origin/instrument-and-tools/comparative-study-on-preferential-rules-of-origin/specific-agreements/agreement-topics/tsp-eur.aspx>

- 직접운송원칙은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직접운송만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 일부 원산지 모델에서는 주로 지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간접운송 또는 제3국을 통하여 운송된 경우를 인정하고 있음
 - 직접운송이 항상 가능하지만은 않은 경우 또는 위급한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직접운송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
- 두 원산지 모델의 큰 차이점은 NAFTA에는 직접운송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는 반면, 유럽의 원산지 규정은 직접운송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음
- 유럽의 경우 Article 13에서 계약당사국 간의 직접운송을 요구하고 있음
 - Euro-Med cumulation system에 참여하고 있는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하는 것 또한 인정하고 있음

- ☐ 예외적으로 관세당국의 감독하에 운송 중 하역(unload), 재선적(reload) 또는 물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공정을 제외한 저장만 가능함
- ☐ 또한 제3국을 단순 경유함을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운송서류와 비공정 명세서와 같은 다른 입증서류를 요구함
- ☐ NAFTA의 경우 Article 411 환적(Transshipment) 조항에 체약당사국 이외의 영역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물품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체약당사국으로 운송하기 위한 공정 이외의 작업을 제한하고 있음
- ☐ NAFTA의 환적 조항의 개념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됨
 - 특혜원산지 요건은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서 이행되어야 함(유럽의 ‘영역원칙’과 동일)
 - 하역, 재선적 또는 운송 중 물품의 상태를 보존하기 위한 작업의 허가
- ☐ 사실 NAFTA의 Article 411 환적 조항은 유럽의 Article 12 ‘영역원칙’과 유사함
- ☐ NAFTA는 유럽과 달리 직접운송원칙 규정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으며, 관세당국의 감독하에 엄격하게 직접 운송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 다만, Article 411은 Article 401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생산을 거친 물품은 역외국가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물품의 상태를 보존하기 위한 작업 이외의 공정을 거친 경우 원산지 자격을 상실함을 규정함
- ☐ 이는 역외국가를 경유하는 운송을 금지하는 것은 아님
- ☐ 따라서 Article 411 자체는 실질적으로 역내국가에서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생산 및 공정을 제한하는 ‘영역요건’이라 할 수 있음

〈표 II-4〉 EURO-MED Origin Protocols와 NAFTA 직접운송원칙 규정 조항

European Model for “Direct Transport” TITLE III - TERRITORIAL REQUIREMENTS - Article 13	NAFTA Model for “Trans-shipment” PART TWO: TRADE IN GOODS - Chapter Four: Rules of Origin - Article 411
1. The preferential treatment provided for under the Agreement applies only to products,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is Protocol, which are transported directly between the Community and Egypt or through the territories of the other countries referred to in Articles 3 and 4 with which cumulation is applicable. However, products constituting one single consignment may be transported through other territories with, should the occasion arise, trans-shipment or temporary warehousing in such territories, provided that they remain under the surveillance of the customs authorities in the country of transit or warehousing and do not undergo operations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or any operation designed to preserve them in good condition. Originating products may be transported by pipeline across territory other than that of the Community or Egypt. 2. Evidence that the conditions set out in paragraph 1 have been fulfilled shall be supplied to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country by the production of: (a) a single transport document covering the passage from the exporting country through the country of transit; or (b) a certificate issu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country of transit: (i) giving an exact description of the products; (ii) stating the dates of unloading and reloading of the products and, where applicable, the names of the ships, or the other means of transport used; and (iii) certifying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products remained in the transit country; or (c) failing these, any substantiating documents.	A good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an originating good by reason of having undergone production that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Article 401 if, subsequent to that production, the good undergoes further production or any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or any other operation necessary to preserve it in good condition or to transport the good to the territory of a Party.

Ⅲ. 우리나라의 직접은송원칙 규정

1. 관련 법령

- 우리나라는 2013년 9월 기준으로 46개국과 9건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이 발효된 상태
- 콜롬비아와는 가서명한 상태로 비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음
 - 중국을 비롯하여 21개국과 5건의 FTA가 협상 진행 중이며, 협상 준비 또는 공동 연구 단계에 있는 FTA는 10건임

〈표 Ⅲ-1〉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구분	상대국
발효(9건, 46개국)	칠레(2004년 4월 1일 발효), 싱가포르(2006년 3월 2일 발효), EFTA ¹⁾ (2006년 9월 1일 발효), ASEAN ²⁾ (상품무역협정 2007년 6월 발효), 인도(2010년 1월 1일 발효), EU ³⁾ (2011년 7월 1일 발효), 페루(2011년 8월 1일 발효), 미국(2012년 3월 15일 발효), 터키(2013년 5월 1일 발효)
타결(1건, 1개국)	콜롬비아
협상 진행(5건, 21개국)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한중일, RCEP(16개국) ⁴⁾
협상 준비 또는 공동연구(10건, 21개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멕시코, GCC(6개국) ⁵⁾ , MERCOSUR(4개국) ⁶⁾ , 이스라엘, 중미(5개국), 말레이시아

주: 1)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3) European Union: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몰타,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2013년 7월 가입, 협정문(한-태 FTA 협정문을 수정하여 작성)에 가서명한 후 발효 절차 진행 중)

4)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지역무역협정

5) 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아랍에미리트공화국(UAE)

6) 북미공동시장: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FTA는 국제조약으로 국내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며, FTA와 국내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조치는 각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내국법에 따름¹⁰⁾
- 우리나라는 각 FTA의 이행법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이하 ‘FTA 관세특례법’)이 있음

가. FTA상 직접운송원칙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접운송원칙의 규정은 직접운송 요건과 경유 요건을 함께 규정하는 유럽형과 비체약당사국에서의 작업 범위만을 규정하여 직접운송 요건을 완화하는 미주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우리나라가 체결한 9개 FTA 가운데 유럽형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한 체약당사국은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터키가 있음
- 직접운송원칙 규정은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고,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의 영역 간에 직접 운송된 물품에 특혜관세대우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함
- 직접운송 요건의 예외로 수출당사국 또는 수입당사국이 아닌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될 경우 또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하되, 경유할 경우의 요건을 협정마다 약간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 첫째, 비당사국에서 선적되거나 환적된 경우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감독 또는 통제 하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함
 - 둘째, 비당사국에서 환적 관련 작업인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

10) 김석오, 「FTA 원산지 규정 벌칙 법규 입법사례 비교」, KIEP 전문가 간담회, 2008, p. 1; 김한성 외, 『한국 FTA 원산지 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p. 41

한 작업 이외의 작업을 제한함

☐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특혜관세대우의 적용을 배제함

☐ 미주형 직접운송원칙으로는 직접운송 요건은 두지 않고 ‘환적’ 또는 ‘통과 및 환적 규정’을 둔 한-칠레 FTA, 한-미 FTA가 있음

☐ 통과 및 환적 규정은 직접운송 요건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여 공정이 수행되거나 관세당국의 감독을 벗어난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아래에서는 직접운송 규정을 둔 FTA와 그렇지 않은 FTA로 나누되,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구분함

〈표 Ⅲ-2〉 협정별 직접운송원칙 비교

구분	관련 규정	직접운송원칙 유무
한-칠레 FTA	제4.12조 환적(transshipment) 통일규칙 제6-1조 환적	×
한-싱가포르 FTA	제4.15조 직접운송(direct consignment) 제5.9조 특혜관세의 거부(denial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다항	○
한-EFTA FTA	부속서 I 제1조 탁송화물(consignment) 부속서 I 제14조 직접운송(direct consignment)	○
한-ASEAN FTA	부속서 3 제9조 직접운송(direct consignment) 부록 1 제19조	○
한-인도 FTA	제3.15조 직접운송(direct consignment) 제4.8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제3항 (claims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
한-EU FTA	의정서 제1조 탁송화물(consignment) 의정서 제13조 직접운송(direct consignment)	○
한-페루 FTA	부속서 제3.14조 직접운송(direct consignment)	○
한-미국 FTA	제6.13조 통과·환적(transit and transshipment)	×
한-터키 FTA	의정서 제1조 탁송화물(consignment) 제13조 직접운송(direct transport)	○

자료: 이영수·권순국, 「FTA 원산지 규정상의 직접운송원칙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4권 4호, 2012, p. 391, 재인용

1)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한 FTA

가) 한-싱가포르 FTA, 한-ASEAN FTA, 한-인도 CEPA, 한-페루 FTA

- ☐ 이들 FTA는 관세 정부당국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 방식을 취하고 있음
 - 단, 한-페루 FTA의 경우 기관증명과 자율증명 방식을 동시에 취함¹¹⁾
 - － 협정발효 이후 5년간은 기관증명을 원칙으로 하되 인증수출자 및 미화 2천불 이하 수출자에 대해서는 원산지신고서 방식의 자율증명을 허용하고, 발효 6년 이후부터는 부속서 서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는 자율증명 방식으로 변경됨
- ☐ 한-싱가포르 FTA는 제4장 원산지 규칙 제4.15조에 따라 물품이 체약당사국 간에 직접 운송되지 않거나 경유 운송 또는 환적될 경우 제5.9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음¹²⁾
- ☐ 또한 제5장 통관절차 제5.9조 다. 특혜관세대우의 거부에 경우 요건으로 수입국 관세 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함¹³⁾

11) 한-페루 FTA의 직접운송원칙은 미주형, 유럽형도 아닌 혼합형이라는 의견이 있음

12) 한-싱가포르 FTA Chapter 4: Rules of Origin Article 4.15: Direct Consignment A good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an originating good of a Party by reason of having undergone production that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Article 4.2, if, subsequent to that production:

- (a) the good is not transported directly 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or
- (b) where the good is shipped through or transshipped in the territory of a country that is not a Party under this Agreement, the importer has failed to meet the requirements stipulated in paragraph (c) of Article 5.9.

13) 한-싱가포르 FTA Chapter 5: Customs Procedures Article 5.9: Denial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c) if, where the good is shipped through or transshipped in the territory of a country that is not a Party under this Agreement, the importer of the good does not provide, on the request of that Party's customs administration:

- (i) a copy of the customs control documents that indicate, to the satisfaction of the importing Party's customs administration, that the goods remained under customs control while in the territory of such non-Parties;
- (ii) any other information given by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such non-Parties or other relevant entities, which evidences that they have not undergone, in such non-Parties, operation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crating, packing, repacking or

-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동안 세관의 통제하에 있었음을 수입당사국의 관세 행정기관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내는 세관 관리문서의 사본
- 하역, 재선적, 크레이팅, 포장, 재포장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작업 이외의 작업을 비당사국에서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비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기관이 제공하는 정보
- 하역, 재선적, 크레이팅, 포장, 재포장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작업 이외의 작업을 비당사국에서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수입자가 제출하는 그 밖의 정보 또는 상업서류

□ 한-ASEAN FTA는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제9조 직접운송, 부록 1 제19조에 관련 내용을 규정함

- 한-ASEAN FTA의 경우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사유여야 할 것을 제한하는 규정 및 비당사국에서의 거래 또는 소비를 금지하는 것을 명시하여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¹⁴⁾
-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
 - 그 상품의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any other operation necessary to keep them in good condition; or

- (iii) any other information or commercial documents given by the importer which evidence that they have not undergone, in such non-Parties, operation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crating, packing, repacking or any other operation necessary to keep them in good condition; or

14) 한-ASEAN FTA Annex 3 Rules of Origin Rule 9 Direct Consignment 2.

- (a) the transit is justified for geographical reason or by consideration related exclusively to transport requirement;
- (b) the good has not entered into trade or consumption there; and
- (c) the good has not undergone any operation other than unloading and reloading or any operation required to keep it in good condition.

- 또한 비당사국에서 운송이 이루어진 경우 수입당사국의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가운데 하나로 통과선하증권(Through B/L)¹⁵⁾을 명시하고 있음¹⁶⁾
 -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의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경유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수입당사국의 관련 정부당국에 제출하여야 함
 - －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 － 원산지증명서 원본
 - － 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분
 - － 그 밖에 부속서 3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 이는 다른 협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하지 않기도 하며, 통과선하증권을 요구하는 협정으로는 유일함
 - 대우인터내셔널이 한-아세안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을 요구하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세관에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아 협정 관세율 적용을 거부한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음(2012년 7월 20일)

- 한-인도 CEPA와 한-페루 FTA는 공통적으로 경유운송의 입증서류로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을 명시하고, 비당사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을 것을 규정함
 - 한-인도 CEPA는 제3장 원산지 규정 제3.15조 직접운송, 제4장 원산지 절차 제4.8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에 관련 규정을 둔
 - 한-페루 FTA는 부속서 원산지 규정 제3.14조 직접운송(direct consignment)에 관

15) 선주가 다른 선박을 이용하거나 해운과 육상운송을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된 경우 최초운송업자가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발행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운송증권

16) 한-ASEAN FTA Appendix I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for the Rules of Origin Rule 19
 (a) a through Bill of Lading issued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b) a Certificate of Origin;
 (c) a copy of the original commercial invoice in respect of the good; and
 (d) other relevant supporting documents, if any, as evidence that the requirements of Rule 9 of Annex 3 are being complied with.

련 규정을 둠

- 종합하여 보면, 이들 직접운송 요건을 두고 예외적으로 경유 또는 환적하는 경우 공정 제한 또는 관세당국의 감독 요건을 두고 있음
- 특히 한-ASEAN FTA의 경우 경유운송의 경우에 지리적, 운송상 이유로 제한한다는 문구와 경유운송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또한 명시하여 주요국 가운데 가장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 특징으로는 한-ASEAN FTA, 한-인도 CEPA와 한-페루 FTA의 경우 당해 물품이 비당사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을 것을 규정하여 제3국에서의 거래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음
- 한-페루 FTA는 제2항 (나)에 비당사국에서 거래되거나 교역되지 않아야 함을 규정

〈표 Ⅲ-3〉 한-싱가포르 FTA, 한-ASEAN FTA, 한-인도 CEPA, 한-페루 FTA
직접운송원칙 비교

구분	직접/경유운송	경유국 관세당국 감독	경유국 공정 제한	추가 규정
싱가포르	○	○	○	
	—	—	• 제한공정 입증서류 제출의무(수입자, 비당사국)	
아세안	○	×	○	• 경유국에서의 거래 또는 소비 금지
	• 지리적 또는 운송상 사유로 제한 • 경유운송 입증서류 명시	—	—	
인도	○	○	○	• 경유국에서의 거래 또는 소비 금지
	• 경유운송 입증서류 명시	• 입증서류 제출의무	—	
페루	○	○	○	• 경유국에서의 거래 또는 교역 금지
	• 경유운송 입증서류 명시	• 입증서류 제출의무	• 보관의 경우, 경유국 관세당국 발행 서류 제출	

나) 한-EFTA FTA, 한-EU FTA, 한-터키 FTA

- 이들 국가들은 모두 자율증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으로서, 송장 등의 서류에 원산지 문안을 기입하는 원산지신고서 방식을 취하고 있음
 - 특히 EU의 경우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춰 수출국 관세당국의 인증을 받은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 － 원산지 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한-EFTA FTA, 한-EU FTA와 한-터키 FTA는 계약당사국 간의 직접운송을 규정하고 있음
 - 한-EFTA FTA: 제2장 상품 무역 제1부 원산지 규정 제1조 정의 및 제14조 직접운송
 -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 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절 원산지 규정 제1부 일반규정 제1조 정의 및 제3부 영역요건 제13조 직접운송
 - 한-터키 FTA: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 제1절 원산지 규정 제1조 정의 및 제13조 직접운송
- 이들 FTA에서는 모두 제품(product) 또는 물품(goods)의 개념이 아닌 탁송화물(consignment)을 정의하고 있으며, 직접운송의 예외로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물품을 탁송화물로 제한함
- 탁송화물은 한-EFTA FTA와 한-EU FTA 모두 원산지 규정 제1조 정의에 일시적으로 송부된 물품 또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 단일 송품장에 의한 제품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¹⁷⁾
 -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적으로 송부된 제품, 수출자로부터 수하인까지의 단

17) 한-EFTA FTA Section I Rules of Origin Title I Article Definitions “consignment” means products, which are either sent simultaneously from one exporter to one consignee or covered by a single transport document covering their shipment from the exporter to the consignee or, in the absence of such a document, by a single invoice;

일 운송서류에 의해 선적된 제품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 송품장에 의한 제품을 말함

- ☐ 한-EFTA FTA는 비당사국에서 하역, 재선적 등 환적 관련 작업을 수행할 경우 경유국의 관세당국의 감시하에 있을 것을 규정¹⁸⁾
- ☐ 비당사국에서의 공정으로 한-EFTA는 한-EU FTA와 달리 '탁송화물의 분리(splitting-up of consignments)' 작업을 포함하고 있음¹⁹⁾
- ☐ 한-EFTA FTA는 직접운송 요건의 예외로 탁송화물 또는 단일 운송서류의 제출의무를 명시하지는 않고 수입국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적절한 증거를 제공하도록 함
- ☐ 다만 제3국에서 발행하는 운송서류와 관련하여, 「2007년 원산지증명서 확인요령 지침」에 따른 한-EFTA FTA 원산지신고서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이 수출자가 발행한 것으로 한정함
 - 무역거래 관행상 상업서류가 제3국에서 발행되는 경우도, 원산지신고서가 기재된 상업서류(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운송서류(B/L) 등)는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만 유효함
 - 송품장이 제3국에서 발행되었을 경우, 동 송품장에 원산지신고서를 기재할 수 없으며, 수출자 발행한 상업서류(예: 포장명세서)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양 서류 간 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
- ☐ 한-EU FTA는 직접운송 요건의 예외인 비당사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될 수 있는 대상으로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products constituting one

18) 한-EFTA FTA Section I Article 14 Direct Consignment During this period the products shall remain under customs control in the country of transit.

19) 한-EFTA FTA Section I Article 14 Direct Consignment However, products may be transported through territories of non-parties, provided that they do not undergo operations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splitting-up of consignments or any operation designed to preserve them in good condition.

single consignment)'을 정하고 있음²⁰⁾

- 이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 당사자 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음
-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함

□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수입당사자는 관세당국에 수출당사국에서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것을 입증하는 단일 운송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한-EU FTA의 경우 비당사국 관세당국 감독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비당사국의 경유운송 또는 환적 관련 작업과 관련하여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²¹⁾

-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증명서로, 제품의 정확한 설명,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20) 한-EU FTA TITLE I Territorial Requirements Article 13: Direct Transport 1.

1. The preferential treatment provided for under this Agreement applies only to products,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is Protocol, which are transported directly between the Parties. However, products constituting one single consignment may be transported through other territories with, should the occasion arise, trans-shipment or temporary warehousing in such territories, provided that they are not released for free circulation in the country of transit or warehousing and do not undergo operations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or any operation designed to preserve them in good condition.

21) EU FTA TITLE I Territorial Requirements Article 13: Direct Transport 2.

(a) evidence of the circumstances connected with trans-shipment or the storage of the originating products in third countries;
 (b) a single transport document covering the passage from the exporting Party through the country of transit; or
 (c) a certificate issu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country of transit:
 (i) giving an exact description of the products;
 (ii) stating the dates of unloading and reloading of the products and, where applicable, the names of the ships, or the other means of transport used; and
 (iii) certifying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products remained in the country of transit.

일자, 적용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이 기재되어 있고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증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한-EFTA FTA와 한-EU FTA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우선 한-EU FTA의 당사자인 EU는 회원국 간의 역내운송을 인정하는 반면, 한-EFTA의 당사자인 4개국은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별개의 영역으로 봄
 - 예외적으로 내륙국가인 스위스는 인접국의 개념을 FTA 특레고시에 반영하여 해상 운송을 위한 운송을 인정함
- 둘째로 비당사국에서의 허용 작업의 범위인데, 한-EFTA FTA는 환적 관련 작업 이외에도 탁송화물의 분리 작업을 포함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보세창고 인도조건 거래물품²²⁾을 포함하여 경유국에서 분할 선적된 물품을 단일 탁송화물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논쟁이 있음
- 한-EU FTA의 관세위원회에서는 EU 측에서 EU산 물품을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보관하다가 탁송화물을 분리해 운송하는 경우에도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해달라는 입장임
- 반면 우리나라는 물품의 동일성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수출자의 책임에 대한 정확한 증빙서류나 한계가 없다는 이유로 특혜관세 적용을 반대하고 있음

22)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방식은 보세구역(보세창고) 인도조건으로, 수출입은 수출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수입국 내의 관리인(해외지점, 사무소 등)을 지정하고 물품을 무환으로 반출하여 수입국 내 보세창고에 반입시키고 현지에서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거래 방식을 말함. 주로 범용성 원자재나 선용품 등의 거래에 이용됨. BWT 수입이 일반적인 수입형태와 다른 점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에 사전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수출업자의 책임하에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하여 반입된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기까지는 수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된다는 점이며, BWT 물품으로 반입된 경우에는 판매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이 가능.

〈표 Ⅲ-4〉 한-EFTA FTA, 한-EU FTA 및 한-터키 FTA 직접운송원칙 비교

구분	직접/경유 운송	경유국 관세당국 감독	경유국 공정 제한	경유국 공정 범위
EFTA	○	○	○	• 하역, 재선적, 탁송화물의 분리 또는 상품의 보존 작업
	—	• 입증서류 제출의무	• 제한공정 입증서류 제출의무	
EU, 터키	○	×	○	• 자유유통을 위한 반출 금지,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의 보존 작업
	• 탁송화물만 경유 허용 • 단일 운송서류	• 관세당국 발행 서류(물품 설명, 환적일자, 환적 운송 수단, 경유증명)	• 환적 또는 보관 관련 상황의 증거	

2)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하지 않은 FTA

- ☐ 칠레와 미국은 자율증명방식을 취하고 있어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음
- ☐ 한-칠레 FTA와 한-미 FTA는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하지 않고 ‘환적’ 또는 ‘통과 및 환적’ 규정을 두고 있음
- ☐ 한-미 FTA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6.13조 통과 및 환적 규정은 원산지 상품의 특혜관세대우 배제 사유로 비당사국에서의 환적 관련 작업 이외의 공정을 거치는 경우와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경우를 규정함²³⁾

23) 한-미 FTA Chapter 6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 Article 6.13: Transit and Transshipment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 good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an originating good if the good:

(a) undergoes subsequent production or any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or any other operation necessary to preserve the good in good condition or to transport the good to the territory of a Party; or

(b) does not remain under the control of customs authorities in the territory of a non-Party.

- 한-칠레 FTA는 직접운송원칙에 대해 우리나라와 견해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당사국의 경유운송을 입증하는 서류와 경유물품의 수입 기간에 대한 규정을 통일규칙으로 추가하였음
- 최종 목적지가 기재된 선하증권이 제3국에서 발급되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입까지의 운송경로와 모든 선적 또는 환적 경로를 나타내는 송장,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과 같은 증빙서류로 당해 경유운송을 입증할 수 있음
- 이는 제3국에서 반입되는 보세창고 인도조건 거래물품도 협정상 원산지 상품이면서, 제4.12조의 규정을 충족하면 협정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²⁴⁾
- 특히, 한-칠레 FTA는 다른 협정과 달리 경유 또는 환적된 수출당사국 물품에 대해 수입 당사국으로의 수입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음

〈표 Ⅲ-5〉 한-미 FTA, 한-칠레 FTA 직접운송원칙 비교

구분	경유운송	경유국 관세당국 감독	경유국 공정 제한	경유국 공정 범위
미국	○	○	○	•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의 보존 작업
	—	—	—	
칠레	○	○	○	• 하역, 재선적, 상자포장, 포장과 재포장 또는 물품의 보존 작업
	• 모든 운송 경로를 나타내는 송장,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	—	

24) 이영달, 「특혜무역협정의 직접운송 규정에 대한 고찰」, 『관세와 무역』, 2012

나. 국내법상 직접운송원칙

- ☐ 각 FTA의 원활한 이행과 관세행정의 협조를 위하여 FTA 관세특례법을 적용하며,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함
- ☐ 「FTA 관세특례법」 제9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직접운송원칙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 FTA 관세특례법에 따르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원산지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됨
- ☐ 다만,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수입자가 운송요건을 입증하거나 직접운송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산지를 인정함
 - 각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
 -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생산 또는 작업과정을 제한하고 비원산지 국가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함(2008년 신설)

〈표 Ⅲ-6〉 FTA 관세특례법 직접운송원칙 규정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2항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3조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船積)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換積)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한 물품의 범위, 적용 방법 및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 그 밖에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1]	제13조(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결정)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자가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7.15>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7.15> 1. 원산지가 아닌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작업과정이 추가된 경우. 다만, 수입항까지 국제운송에 필요한 하역·선적·포장에 필요한 작업이나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과정이 추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 또는 지역의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지 아니한 경우

□ 또한 특례고시 제3-5-1조에는 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세관의 통제하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원산지 확인방법을 규정²⁵⁾

- 25) 제3-5-1조(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① 세관장은 법 제9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2.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었음을 해당 국가의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
- ② 세관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우리나라까지의 운송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감안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상의 적출항이 체약상대국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2. 체약상대국이 내륙지국가(예: 스위스연방)로서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상의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류상의 수출자로 기재되어 있고, 적출항이 체약상대국의 인접국가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 ③ 세관장은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당해 물품이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세관의 통제하에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원산지를 인정한다.
- ④ 서류의 제출 절차는 규칙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다.

- 한편, 「관세법」 제229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직접운송원칙을 적용함²⁶⁾

2. 해석기준 및 사례

가. 해석기준

- 직접운송원칙의 해석에 관하여 당국의 행정에 관한 훈령인 지침으로는 「FTA 원산지 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 지침」(관세청 FTA 이행과-190호, 2007년 11월 1일)과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관세청 FTA 집행기획담당-1170호, 2011년 6월 28일), 「한-미 FTA 집행에 관한 지침」(관세청 FTA 집행기획담당관-1228호, 2012년 3월 20일)이 있음
- 관세청이 2007년 11월 시달한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 지침」에서는 계약당사국 간의 운송 여부, 단순경유를 입증할 수 있는 공적인 입증서류로서 최초 출항지와 최종 목적국의 운송서류를 확인하고 있음
- 당해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의 목적으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는 등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는 운송회사가 발한 운송서류로 확인함

26)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우리나라에 운송·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만 그 원산지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일 것
 - 가.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단순 경유한 것
 - 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것
 - 다.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그 밖에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외의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아니한 것
2. 박람회·전시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원산지가 아닌 국가로 수출되어 해당 국가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전시목적에 사용된 후 우리나라로 수출된 물품일 것

- B/L, 화물운송장 등의 최초 출항지와 최종 목적국(한국)이 계약상대국이면 인정
- 운송서류의 적출국이 계약당사국이 아닌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컨테이너 봉인 번호 등 계약상대국으로부터 운송된 물품과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 요건 충족으로 인정
- 상기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단순경유를 입증할 수 있는 공적인 입증서류를 추가로 확인
 - 공적인 입증서류의 예로는 경유국 세관당국이 발행한 보세구역 반출입 신고서류 또는 보관증, 단순경유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음
- 2011년 6월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에는 수입물품 특혜통관 관련 사항으로 '2.3. 직접운송의 적용 범위'에 관련 내용을 시달함
- 원산지 제품이라 해도 양 당사자 간 직접적으로 운송되어야 협정관세 적용 가능
 - EU 역내 국가이면 수출국과 선적국(출항국)이 다르더라도 EU 역내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경우에는 적용 대상
- 협정당사국 이외의 지역(역외 영역)을 경유하는 경우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이 부득이한 사유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는 경우 역외 영역을 경유해도 적용 가능
- 하지만 이 경우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아야 하며 하역, 재선적 또는 양호한 상태로 물품을 보존하기 위한 공정을 수행한 경우에만 인정
- 2012년 한-미 FTA 집행에 관한 지침에는 수입자 관련 사항으로 '8. 운송원칙(제3국 통과 및 환적 물품)'에 관련 내용을 시달함
- 비당사국(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한-미 FTA의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에 해당

하지 않음을 신청인이 서류로 입증하여야 함

- 비당사국에서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는 경우
-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 ☐ 다만, 현행 특례고시 제3-5-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선하증권 등 운송 서류로 명백하게 확인되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나. 사례

1) 제3국 경유운송 및 입증서류 미제출

- ☐ 보세창고 인도조건의 거래로 한-ASEAN FTA에서 규정하는 직접운송 원칙의 예외로 인정받기 위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특혜원산지가 부인된 사례(조심2011관0092, 2011년 9월 21일)
- ☐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주석 괴를 싱가포르 내 사설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상태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수입자는 물품대금을 싱가포르 수출자에게 지급함
- ☐ 제3국인 싱가포르를 수출국으로 보는 경우 직접운송은 충족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수출당사국이 아닌 인도네시아 통상부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유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인도네시아 수출 시 B/L의 최종 목적지는 제3국(싱가포르)이며, 제3국에 보관 중 최종 구매자가 결정되어 싱가포르에서 다시 대한민국으로 B/L이 발행됨
- ☐ 그러나, 한-ASEAN FTA에서 규정하는 경유운송 입증서류인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through B/L)'을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유국인 싱가포르 발급기관의 재수출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도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운

송원칙에 위배됨

- 한-ASEAN FTA에서는 직접운송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지리적 이유 또는 오직 운송 요건 등의 사유로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될 경우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필수서류로 제출하도록 함

□ 또한 당초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로 수출 시 작성된 선하증권에는 목적국이 싱가포르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싱가포르 수출자와 청구인이 계약한 후 선하증권 및 송품장의 목적국이 대한민국으로 기재되어 추가 발행됨

- 보통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될 경우 생산국에서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 및 선하증권상 목적국·환적국이 기재되어 있어 제3국의 경유를 지리적 이유 또는 오직 운송 요건을 고려하여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함

□ 이는 인도네시아 수출자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거래를 대비, 계약물량이 조기 생산되거나 안전재고의 활용을 위한 보관 목적으로 제3국을 경유한 것으로, 지리적 이유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제3국 경유로 볼 수 없음

□ 경유운송의 지리적 이유 또는 운송 요건 해당 여부(질의회신, 관세청 FTA 이행과-1193, 2008년 8월 5일)²⁷⁾

□ 수입자는 미국의 상표권자와 수입 계약을 맺고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의류를 미국 상표권자 회사의 방침에 따라 미국의 로스엔젤레스를 거쳐 최종 수입국으로 운송

□ 지리적 이유라 함은 당사국이 내륙국 등으로 항구 등이 없어 제3국을 경유하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운송 요건이라 함은 수출 시 최종 수입국이 결정되고, 선적하였으나 운송편(선박, 항공기)의 사정으로 부득이 제3국을 경유해야 하는 경우를 말함

27) 최홍석·이영달, 『FTA 시대 원산지 이론과 실무』, 2011, p. 526

- ☐ 따라서 한-ASEAN FTA에 따른 지리적 이유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 해당되는 경유인지에 대하여 ‘미국 상표권자의 방침에 의한 경유’는 운송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 ☐ 한-칠레 FTA에서 규정한 제3국에서의 환적 및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부인당한 사례(서울세관 이의신청 2007-11호, 2007년 6월 14일)
- ☐ 계약당사국인 칠레에서 생산된 와인을 제3국인 프랑스에서 환적하여 한국에 수입한 경우로, 생산자와 수출자 사이의 선하증권과 상업송장에 포함된 경영 관련 기밀사항을 사유로 환적 관련 서류 및 세관 감시하에 보세구역에서 분류 및 반출되었다는 입증 서류 제출을 거부
- ☐ 서울세관은 실지심사를 통해 직접운송원칙의 요건 불충족을 사유로 관세 등을 부과

2) 관세당국의 통제

- ☐ 칠레에서 선적된 후 멕시코에서 환적하여 국내에 수입된 목재에 대하여 직접운송원칙 위반을 사유로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서울세관 과세전적부심 2007-83호, 2007년 7월 30일)
- ☐ 원산지인 칠레와 적출국인 멕시코가 상이하며, 제3국인 멕시코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환적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음

3) 제3국에서의 작업

- ☐ 스위스에서 제조된 샴푸를 독일 물류센터에서 병입(bottling) 과정을 거쳐 국내로 수입한 경우, 직접운송원칙 위배를 사유로 한-EFTA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

- 한-EFTA FTA의 검증사례로, 스위스 상품이 독일을 경유하여 운송되면서 독일에서 물품이 ‘혼재’되었다 하더라도 컨테이너의 Seal이 손상되지 않으면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보세창고 인도조건의 거래(최종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 한-EU FTA에 대한 상담사례로 EU 물품이 싱가포르 물류센터를 거쳐 수입되는 경우 직접운송원칙에 위배
- EU 수출자가 구매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당사국(싱가포르)의 물류기지로 발송하여 보관 중이던 물품을 EU 수출자와 한국 수입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비당사국에서 한국으로 운송되는 경우 동 규정에 위배됨
- 협정당사국의 수출자가 최종 목적지가 결정되지 않은 원산지 상품을 제3국 보세구역으로 송부하여 반입한 후, 계약에 따라 우리나라로 수출한 경우 한-EFTA FTA의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서울세관 질의회신, 2008년 7월 25일)
- 운송경로는 협정당사국인 아이슬란드에서 비당사국인 네덜란드의 보세창고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됨
- 최종 목적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품이 제3국의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일시 장치된 경우라도, 협정에서 허용하는 작업 이외의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제3국 세관의 통제하에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5) 한-EU FTA에서의 '탁송화물의 분리' 인정 여부²⁸⁾

- 2012년 7월 1일로 한-EU FTA 1주년을 맞아 EU의 한국으로 수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수정 및 보완사항들이 나왔음
- 특히, EU 업계는 FTA 직접운송원칙의 한계가 오늘날 글로벌 물류 시스템에 있어 제3국에서의 탁송화물의 분리(splitting of consignment)와 같은 물류 관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받아들이고 있음
- 제3국을 경유하는 무역 거래의 원활화를 지향하고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는 향후 체결될 FTA에 적용가능하도록 제3국에서의 탁송화물의 분리를 추가가공금지 규정(non-alteration rule)으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 2012년 5월 작업문서(TAXUD/446280/12)의 제안서를 관세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임²⁹⁾
 - 비공정원칙(non-manipulation rule)으로 알려진 추가가공금지기준은 EU의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일반특혜관세)의 직접운송원칙을 보다 유연하게 규정한 것임(유럽공동관세법 CCCIP 제74조)
- EC는 제3국에서 보관 또는 추가 공정에 대한 관세당국의 통제(customs control)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방법 두 가지를 제시함
 - 제1안: 제3국에서의 탁송화물의 분리를 허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비공정명세서(non-manipulation certificate)와 함께 관세당국의 통제를 요구
 - 제2안: 관세당국의 통제 요건은 삭제, 그러나 탁송화물 분리에 대해 의심이 가는 경우 수출당사국에 검증을 요청(예: 수출자가 최초 선적 건에 대해 'split consignment'

28) Ernst & Young, *Trade Watch*, Volume 12, Issue 1, March 2013, pp. 11~12; EC Customs Code Committee Origin Section Working Document(TAXUD/1184111/12), 2012. 8, pp. 4~6

29) 2012년 12월과 2013년 2월 관세법위원회 원산지 부문(the Origin Section of the Customs Code Committee)에서 이 논제에 대한 추가적인 회의가 있었으나, 이와 관련된 문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임

를 추적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수출자 또는 인증수출자에게 최초로 수출국에서 선적된 탁송화물을 추적할 수 있는 적절한 입증서류를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

- 수입당사국이 분리가 이루어진 제3국에서 관세당국의 통제 여부를 감독하고 검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을 고려하여, EU 회원국들은 제2안과 같은 '검증 요청 (verification request)'을 포함시키기로 동의하였음
- 공표된 문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제2안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입장이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양 당사국은 직접운송원칙에 대한 변경이 중요하고 또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 우리나라와 EU는 제3국에서의 탁송화물 분리에 대한 FTA 규정에 대해 의견 합의가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있음

IV. 주요국의 직접운송원칙 관련 규정

1. 미국

- ☐ 미국은 20개국과 14건의 FTA가 발효된 상태이며,³⁰⁾ 체약당사국은 이스라엘(ILFTA), 캐나다, 멕시코(NAFTA), 요르단(JFTA), 칠레(CFTA), 싱가포르(SFTA), 호주(AFTA), 모로코(MFTA), 바레인(BFTA), 오만(OFTA),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코스타리카(CAFTA-DR), 페루(PTPA³¹⁾), 한국(UKFTA), 콜롬비아(CTPA), 파나마(PATPA)³²⁾
- ☐ 미국은 주로 직접운송원칙 규정을 두지는 않지만, 환적(transshipment) 규정을 두어 비당사국을 경유할 경우 특혜원산지를 인정하는 요건을 두고 있음
- ☐ 환적 규정의 경유 요건은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있을 것과 하역, 재선적 또는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공정 이외의 추가 작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함

가. FTA상 직접운송원칙

- ☐ 미국은 FTA(또는 PTA) 체약당사국 간 직접운송 또는 예외적으로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 직접운송 규정(Imported directly), 통과 및 환적 규정

30) http://www.cbp.gov/xp/cgov/trade/trade_programs/international_agreements/free_trade/

31) TPA: Trade Promotion Agreement,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내용은 FTA와 거의 유사

32) 각 협정 발효일: ILFTA(1985년 9월), NAFTA(1994년 1월), JFTA(2001년 12월), CFTA(2004년 1월), SFTA(2004년 1월), AFTA(2005년 1월), MFTA(2006년 1월), BFTA(2006년 8월), OFTA(2009년 1월), CAFTA-DR(2006년 3월~2009년 1월), PTPA(2009년 2월), UKFTA(2012년 3월), CTPA(2012년 5월), PATPA(2012년 10월)

(Transit and transshipment) 또는 제3국 공정 규정(Third Country Operation)을 사용하고 있음

1)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한 FTA

- ILFTA, JFTA, BFTA, MFTA, OFTA는 모두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 경유국 관세당국의 감독 의무, 허용되는 공정의 범위는 상이함

가) ILFTA와 JFTA

- ILFTA는 부속서 3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에, JFTA는 부속서 2.2 원산지 규정에 'imported directly' 규정을 두고 예외적으로 다른 국가(intermediate country)를 경유하는 경우 직접운송으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함
- ILFTA와 JFTA는 공통적으로 제3국에서의 non-retail sale을 금지하고 있으며 추가공정의 범위는 같음
- 협정에서 직접 운송(imported directly)되는 것은 체약당사국 간 다른 국가를 경유(pass through)하지 않고 직접운송되는 것(direct shipment)을 의미하며, 경유운송의 경우 두 가지 조건을 명시함
- 하나는 선적된 물품이 경유국에서 상업용으로 반출되어서는 안 되며,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다른 선적서류에 의해 체약 상대국이 최종 목적국임이 입증되어야 함
- 다른 하나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경유국에서 관세당국의 감독하에 있을 것 등 아래의 네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직접운송을 인정함
 - 수입된 물품이 당해 물품의 수입자와 수출자 간의 거래에 의한 소매용 판매를 제외하고는 경유국에서 상업용으로 반출되지 않을 것

- 하역, 재선적 및 물품을 보존시키기 위해 필요한 작업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이 협정에 의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할 것

□ 한편, JFTA는 수입자가 물품이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CBP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예시하고 있음

- 선하증권, 항공(AWB), 포장명세서, 송품장, 수령 및 재고기록 및 통관 관련 서류 등

나) BFTA, MFTA, OFTA, PTPA

□ 이들은 원산지 물품(originating goods)의 정의에서 체약당사국 간 직접 운송(imported directly)를 명시하며, 별도의 통과 및 환적 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직접운송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BFTA: 제4장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제4.1항 원산지 물품(Originating goods)와 제4.9조 통과 및 환적(Transit and Transshipment)
- MFTA: 제5장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제5.1항 원산지 물품(Originating goods)와 제5.9조 통과 및 환적(Transit and Transshipment)
- OFTA: 제4장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제4.1항 원산지 물품(Originating goods)와 제4.9조 통과 및 환적(Transit and Transshipment)
- PTPA: 제4장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제4.1항 원산지 물품(Originating goods)와 제4.9조 통과 및 환적(Transit and Transshipment)

□ BFTA, MFTA, OFTA는 모두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감독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경유국에서의 추가 공정을 제한함

□ 따라서 이들 규정은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 경유국에서의 하역, 재선적 또는 물품을 보존하거나 체약당사국으로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 이외의 생산, 제조 또는 기타 다른 공정을 거치지 않으면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함

2) 통과 및 환적

가) NAFTA

- ☐ NAFTA는 협정문 본문 Article 411에 직접운송원칙을 두고 있음
- ☐ 체약당사국 이외의 지역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물품을 보존하기 위한 작업 이외의 생산 또는 공정을 거친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공정을 제한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음
 - 단, 국내법에서 이외에도 관세당국 감독하에 있을 것, 직접운송원칙의 적용 예외 대상물품을 규정함

나) CFTA, CAFTA-DR, UKFTA, CTPA, PATPA

- ☐ 이들은 통과 및 환적 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CFTA: 제4장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제4.11조 통과 및 환적(Transit and Transshipment)
 - CAFTA-DR: 제4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제4.12조 통과 및 환적(Transit and Transshipment)
 - UKFTA: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제6.13조 통과 및 환적(Transit and Transshipment)
 - CTPA: 제4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제4.13조 통과 및 환적(Transit and Transshipment)
 - PATPA: 제4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제4.12조 통과 및 환적(Transit and Transshipment)
- ☐ 이들은 모두 동일한 통과 및 환적 규정을 두고 있지만, CFTA만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감독을 의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 ☐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 환적 관련 작업으로 공정을 제한하고, 관세당국의 감독하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3) 제3국 운송

- ☐ SFTA와 AFTA는 제3국 운송 규정(Third country transportation)을 두고 있음
 - SFTA: 제3장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제3.12조 제3국 운송(Third Country Transportation)
 - AFTA: 제5장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제5.11조 제3국 운송(Third Country Transportation)
- ☐ 다른 협정의 통과 및 환적 규정에서 비당사국 영역에서 관세당국의 감독하에 있어야 하는 요건을 제외한 규정임
- ☐ 비당사국에서 환적 관련 작업 이외의 공정을 제한하고, 수입자가 물품이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CBP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고 있음

나. 국내법상 직접운송원칙

- ☐ 미국은 연방관세법(United States Code Title 19 Customs Duties: 이하 '19USC')과 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 Title 19 Customs Duties: 이하 '19CFR')에 직접운송원칙에 관한 일반 조항을 두어 특혜관세 수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로부터 수입되는 물품 등의 각 경우에 대해 상세히 규정함
- ☐ 또한 같은 법 및 규정에 각 FTA에 관한 장을 두고 FTA 협정문을 부속서로 첨부함
- ☐ 개별 FTA 이행에 관한 법률은 19USC의 note에 첨부되어, 각 원산지 규정은 19USC와 19CFR에 각 FTA별로 별도의 장을 두고 있음

- NAFTA와 CFTA-DR는 각각 19USC 제21장(§§ 3301-3473), 19USC 제26장(§§ 4001-4112)에 규정하며, 이스라엘, 요르단은 제12장(Trade Act of 1974) §2112 note, 그 외의 FTA는 19USC 제24장(Bipartisan Trade Promotion Authority) §3805 note에 규정함
 - 19CFR Chapter 10(Articles conditionally free, Subject to a reduced rate, etc.)에서 각 FTA별로 원산지 규정이 있으며, 일부 FTA는 아직 별도의 규정이 없음
- 또한, 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³³⁾의 주(General Note)³⁴⁾에는 협정관세 적용에 관한 해석 기준 및 일부 FTA는 일반원산지 결정기준 또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명시함³⁵⁾
- NAFTA, SFTA, CFTA, MFTA, CFTA-DR, BFTA, OFTA, PTPA, UKFTA, CTPA, PATPA: 일반원산지 결정기준인 누적기준, 최소허용기준, 대체재, 부속품 및 부분품, 간접재료, 포장용기, 환적 규정 등 및 제1류부터 제97류까지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을 명시

33) 국가 간 거래되는 상품의 품목분류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촉진시킬 목적 등으로 제정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이 협약의 부속서인 HS품목분류표를 사용하며 HS코드 6단위까지 공통으로 사용함

34) HS품목분류표를 해석하기 위한 법적 효력이 있는 기준은 HS해석에 관한 통칙(General Rules for Interpretation of Nomenclature: GRI), 부(Section)·류(Chapter)·호(Heading)·소호(Subheading)의 주(Note)와 호의 용어(Terms of heading) 및 소호의 용어(Terms of subheading)임

35) 미국무역위원회, <http://www.usitc.gov/publications/docs/tata/hts/bychapter/1300gntoc.htm>

〈표 Ⅳ-1〉 미국의 협정별 국내법 규정

체약상대국	연방 관세법	연방규정	HTS General Note
Israel	19 USC 2112 note	None	GN 8
NAFTA	19 USC 3301-3473	19 CFR 181 and Appendix 19 CFR 102	GN 12
JFTA(Jordan)	19 USC 2112 note	19 CFR 10,701-712 (Subpart K)	GN 18
CFTA(Chile)	19 USC 3805 note	19 CFR 10,401 - 490 (Subpart H)	GN 26
SFTA(Singapore)	19 USC 3805 note	19 CFR 10,501 - 570 (Subpart I)(Interim)	GN 25
AFTA(Australia)	19 USC 3805 note	No interim Regulations published to date	GN 28
Morocco	19 USC 3805 note	19 CFR 10,761-787 (Subpart M)	GN 27
Bahrain	19 USC 3805 note	19 CFR 10,801-827 (Subpart N)	GN 30
OMAN	19 USC 3805 note	19 CFR 10,861-890 (Subpart P)	GN 31
CAFTA-DR	19 USC 4001- 4111	19 CFR 10,581-625 (Subpart J)	GN 29
Peru	19 USC 3805 note	19 CFR 10,901-934 (SubpartQ); 77 FR 64031, Oct. 18, 2012	GN 32
Korea	19 USC 3805 note	19 CFR 10,1001-1034 (SubpartR); 77 FR 15943, March 19,2012 (interim)	GN 33
Colombia	19 USC 3805 note	19 CFR 10,3001 - 3034 (Subpart T); 77 FR 59064, Sept. 26, 2012 (interim)	GN 34
Panama	19 USC 3805 note	(None as of 2/20/13)	GN 35

자료: CBP, Side-by-Side Comparison of Free Trade Agreements and Selected Preferential Trade Legislation Programs--Non-Textiles, 2013년 3월 기준
(http://www.cbp.gov/linkhandler/cgov/trade/trade_programs/international_agreements/fta_comparison.ctt/fta_comparison.pdf)

- ☐ FTA의 이행에 관하여 대부분의 FTA가 주로 제3국 관세당국의 감독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허용 작업 범위를 예시하고 있음
- ☐ 특히 NAFTA는 FTA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제3국 관세당국의 감독하에 있을 것, 일부 품목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1)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한 FTA

- ☐ BFTA, MFTA, OFTA는 경유국에서 허용되는 공정의 범위를 예시하고 있음
 - 검역, 선적 동안 쌓인 먼지 제거, 통풍 또는 건조, 냉장, 염제, 이산화황 또는 그 외 수성 용해액 교체, 파손된 포장재 및 수송용기 대체 및 파손 또는 손상되고 남은 상품 단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품 제거 또는 계약당사국으로 운송시키기 위한 작업³⁶⁾
- ☐ JFTA, BFTA, MFTA, OFTA, PTPA는 모두 국내법에서는 경유국 관세당국의 감독하에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CBP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예시함³⁷⁾
- ☐ 단, PTPA는 국내법에서는 ‘통과 및 환적’ 규정을 두어 경유국 관세당국의 감독하에 있을 것을 명문화하였음

36) inspection, removal of dust that accumulates during shipment, ventilation, spreading out or drying, chilling, replacing salt, sulfur dioxide, or aqueous solutions, replacing damaged packing materials and containers, and removal of units of the good that are spoiled or damaged and present a danger to the remaining units of the good, or to transport the good to the territory of a Party.

37) JFTA 국내법: 19 CFR § 10.711 Imported directly. (b) Documentary evidence. An importer making a claim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under the US-JFTA may be required to demonstrate, to CBP's satisfaction, that the goods were "imported directly" as that term is defined in paragraph (a) of this section. An importer may demonstrate compliance with this section by submitting documentary evidence. Such evidence may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bills of lading, airway bills, packing lists, commercial invoices, receiving and inventory records, and customs entry and exit documents.

2) 통과 및 환적

가) NAFTA

- ☐ NAFTA는 국내법으로 19USC 3332(k)와 19 CFR 181에 부속서(Appendix)로 원산지 규정을 삽입하고 이 가운데 Section 16에 환적(Transshipment) 규정을 두고 있음
- ☐ 원산지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당사국인 경유국의 관세당국 감독하에 있었음을 나타내는 서류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함(19CFR 181.23, General Note 12(L))
- ☐ 당해 물품이 역내 국가에서 생산되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당사국에서 추가 공정(subsequent processing)이 수행되는 경우, 관세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거나 허용 범위를 넘는 공정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특혜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음
- ☐ 허용 공정의 범위는 하역, 재선적 또는 물품을 보존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음
 - 하역, 재선적 또는 검역, 선적 동안 쌓인 먼지 제거, 통풍 또는 건조, 냉장, 염제, 이산화황 또는 그 외 수성 용해액 교체, 파손된 포장재 및 수송용기 대체 및 파손 또는 손상되고 남은 상품 단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품 제거 등과 같이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거나 또는 NAFTA 당사국 영역으로 운송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제외한 추가 생산이나 다른 공정을 거치는 경우
- ☐ 환적(transshipped)된 물품으로서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원산지 물품인 경우 원산지 규정의 목적상 전체를 비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함
- ☐ 한편, NAFTA는 다른 협정과 달리 특정 물품에 대해 이런 직접운송 요건의 예외를 두고 있음

- ☐ 소호 8541.10~8541.60과 8542.10~8542.70의 물품은 NAFTA 역외 국가에서 추가 생산 또는 공정으로 소호 8541.10 내지 8542.90 이외의 세 번으로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운송원칙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³⁸⁾

나) CFTA, CAFTA-DR, UKFTA, CTPA, PATPA

- ☐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하지 않음
- 그 물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
 - 그 물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 ☐ 수입자가 물품이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CBP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고 있음

3) 제3국 운송

- ☐ SFTA는 국내법에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증서류를 제시하고 있음
- ☐ AFTA는 국내법에 아직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음

38) Exceptions for certain goods

(3) Subsection (1) does not apply with respect to a good provided for in any of subheadings 8541.10 through 8541.60 and 8542.10 through 8542.70 where any further production or other operation that that good undergoes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NAFTA countries does not result in a change in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the good to a subheading outside subheadings 8541.10 through 8542.90.

〈표 Ⅳ-2〉 미국의 협정별 직접운송원칙 비교

구분	직접운송원칙	관세당국 감독 제한	추가공정 제한	기타
NAFTA	× (환적)	○	○ (특정공정)	예외 품목 있음
CFTA	× (경유 및 환적)	× (입증서류)	○	
SFTA	× (제3국 운송)	× (입증서류)	○	
AFTA	× (제3국 운송)	×	○	
ILFTA	○	○	○	제3국에서 non-retail sale 금지
JFTA	○	○ (입증서류)	○	제3국에서 non-retail sale 금지
BFTA	○	× (입증서류)	○ (특정공정 명시)	
MFTA	○	× (입증서류)	○ (특정공정 명시)	
OFTA	○	× (입증서류)	○ (특정공정 명시)	
CAFTA-DR	○	○ (입증서류)	○	
PTPA	× (경유 및 환적)	○ (입증서류)	○	
UKFTA	× (경유 및 환적)	○ (입증서류)	○	
CTPA	× (경유 및 환적)	○ (입증서류)	○	
PATPA	× (경유 및 환적)	○ (입증서류)	○	

다. 해석기준 및 사례³⁹⁾

- ☐ 직접운송 규정과 관련하여 NAFTA Verification manual의 부속서⁴⁰⁾에 따르면 직접운송원칙을 확인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음
- ☐ NAFTA 이외의 영역에서 관세당국의 감독을 벗어났는지 여부와 허용되는 범위 이외의 공정을 수행했는지 여부를 검증함
- ☐ 첫째, 샘플 기간 동안의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을 수취하고 검토함
 - 수입되기 전의 운송 경로와 선적 및 환적 지점의 관련 서류를 문서화
 - 통과선하증권에 의해 수출자로부터 수하인까지 물품이 직접 전송되었는지 여부를 결정
 - 수입자로부터 관련 정보를 추가로 취득할 것인지를 고려
- ☐ 둘째, 물품이 통과선하증권에 의해 직접 운송되지 않은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국(an intermediate country)을 경유한 것으로 간주함
 - 제3국에서 관세당국의 감독을 받은 경우
 - 제3국에서 환적 관련 작업 등 제한된 공정만을 수행한 경우
- ☐ 상기를 입증하기 위해 수출자 또는 수입자로부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통관 관련 서류, 수입자 또는 생산자의 선적·생산 기록, 물품의 일련번호 또는 공정 번호, 일시 수입 또는 재수출 관련 서류, NAFTA 이외 국가에서의 통관 절차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 자료
- ☐ 셋째, 선적된 물품이 생산자에 의해 생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39) <http://rulings.cbp.gov/>

40) NAFTA Verification manual Appendix P, Q, R Verification Program

- 대체가능물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되, 대체가능물품인 경우 재고관리시스템 검증 매뉴얼에 따라 절차를 수행함
- 두 번째 검증 절차에 의해 요구한 환적 정보를 통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조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 수량 및 금액을 고려하여 NAFTA 체약당사국으로 수입되도록 조작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

□ 미국의 FTA 직접운송 관련 규정의 해석 사례는 주로 제3국에서의 공정 범위에 대하여 환적 관련 작업인지를 판단하는 심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1) 제3국에서의 작업

- 대상 물품인 ‘the integrated communications system’은 캐나다에서 제조되어 캐나다 산으로 원산지 표기하여 미국의 판매 및 서비스센터로 수입할 예정임(HQ 563134 2005년 1월 18일)
- 캐나다에서 제조되어 유럽에서 판매된 물품이 미국에 수리 목적으로 수입될 경우 NAFTA 적용 가능성을 사전 심사함
- 유럽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된 물품은 유럽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물품을 보존하기 위한 공정 이외의 업그레이드 등 추가 작업이 수행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19USC 3332(k)에 따라 NAFTA 적용을 받을 수 없음

2) 보세창고 인도조건 거래

- 상자 단위로 포장된 이스라엘 산 네트워크(surface mounted networks)는 컨테이너에서 분리(removed from)되어 멕시코에서 제조된 다른 네트워크들과 혼재(consolidate)

된 후, 동일한 컨테이너에 포장되어 미국으로 선적됨(HQ 559130, 1995년 6월 29일)

- ☐ 이 혼재작업은 하역 또는 재선적 공정에 해당하는 작업으로서, 멕시코에서 상업용으로 반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 또한 당해 물품의 최종 목적지는 미국이며 당해 물품이 멕시코에 있는 동안에도 미국 화주가 물품의 소유주임
 - 멕시코로 선적된 물품의 화주는 미국의 화주이며 선하증권에 수입자로 기재되어 있음
 - 또한 미국으로 선적되기 위해 혼재된 이후에는 미국 화주 본인이 수하인 및 수입자가 됨
- ☐ 따라서 ILFTA의 'imported directly' 요건을 충족함
- ☐ 자동차 하니스(harness, HS 8544.30)와 커넥터(HS 8536.90)는 혼두라스 소재의 FCL (미국 청구인) 자회사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직접 운송됨(HQ H081495, 2010년 3월 15일)
 - 멕시코의 보세창고에 운송되어 멕시코 관세당국의 감독하에 보관 중에, 미국 소재의 FCL 고객이 물품을 주문하면 보세창고로부터 미국으로 선적될 예정
- ☐ 연방규정 19 C.F.R. § 10.604에 의하여 비당사국 관세당국 통제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기타 다른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DR-CAFTA의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음

2. EU

- ☐ EU는 현재 멕시코와 칠레, 한국, 남아프리카와 FTA를 맺고 있고, 싱가포르, 페루와 콜

롬비아 등의 국가와는 2012년에 협상을 끝내고 2013년부터 FTA 협상이 발효될 예정임

- EU가 FTA 협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특혜원산지 규정들은 유럽공동체(EC)와 여타 유럽국가 간에 표준규범으로 사용하고 있는 Pan-Euro 특혜원산지 규정(Rules of Preferential Origin used in trade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other European countries: 이하 ‘Pan-Euro 원산지 규정’)을 기초로 작성되고 있음
 - Pan-Euro 원산지 규정을 바탕으로 각 FTA는 계약상대국별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음

가. FTA상 직접운송원칙

1) Pan-Euro 원산지 규정상 직접운송의 원칙

- EU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유무역협정 및 관세동맹을 체결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칠레, 이스라엘, 멕시코, 페루, 스위스, 싱가포르 등이 있음
-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다 보니 다수의 무역자유화 협정에 다양하고 서로 연계되지 않는 특혜원산지 규정이 포함될 수밖에 없고, 원산지 규정이라고 해도 몇몇 조항은 협정별로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하였음
- 또한 특혜원산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일부 협상에 적용된 원산지 규정이 너무 엄격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음⁴¹⁾
- 그리고 이러한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 및 각양각색의 자유무역협정별 원산지 규정으로 인하여 경제운영자들은 서로 다른 원산지 기준을 증명해야 하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음

41) 남풍우·안재진, 「EU와의 FTA 체결협상에 따른 범유럽 원산지 규정 운용의 특징 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무역학회지』 제32권 제4호, 2007. 8, p. 4

- 이에 EU 위원회는 유럽 국가들과의 교역에 이용되는 원산지 규정을 통일화시키는 작업을 제안하였고, 이러한 작업들은 1994년 12월 Essen European Council에서 채택되었음. 1997년 범유럽(Pan-European) 시스템이 발족되면서 이러한 작업들이 거의 완료되었음
- 범유럽(Pan-European) 시스템은 EU가 체결한 FTA에 있어서 동일한 원산지 규정과 품목별(produce-specific)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1997년부터 체결된 EU의 새로운 FTA에는 Pan-Euro 원산지 규정이 포함되고 있음
- EU가 채택하고 있는 특혜원산지 규정은 유럽공동체와 여타 유럽국가 간에 표준규범으로 사용되고 있는 Pan-Euro 원산지 규정을 모델로 작성된 것임. 각 FTA 체결상대국별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Pan-Euro 원산지 규정은 원산지를 판단하는 원산지 규정 분야와 원산지의 적용 여부를 증명하고 확인하는 데 필요한 통관절차(customs procedures) 분야로 크게 구분되며,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별도로 부록(Appendix)에 규정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음. Pan-Euro 원산지 규정과 개별 EU의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규정은 거의 유사함⁴²⁾
- 원산지 부속서는 다시 8개의 타이틀(Title)로 구분되며, 이 타이틀 아래 약 40여 개의 조항(Article)을 두고 있음

42) 안용린, 「EU의 FTA 원산지 규정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8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07. 5, p. 77

〈표 IV-3〉 Pan-Euro 원산지 규정의 구성체계

Title I	정의 규정(제1조 정의)
Title II	원산지 물품의 정의 규정(제2조 내지 제11조) 일반조건, 누적조항, 완전획득, 충분한 공정 및 가공, 불충분공정 및 가공, 적용단위, 약세사리, 잔여부품 및 도구, 세트, 중립재 등
Title III	영역 요건(제12조 내지 제14조) 영역원칙, 직접운송, 전시회
Title IV	관세환급 및 면제(제15조) 관세환급 및 면제
Title V	원산지 증명(제16조 내지 제31조) 일반조건, 원산지증명서 발급, 회계분리, 승인된 수출자,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서 제출, 분할수입,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지원서류, 불일치 및 오류 등
Title VI	행정협력(제32조 내지 제36조) 상호 협조, 원산지증명서의 검사, 분쟁해결, 형벌 및 벌금, 자유지역 등
Title VII	Ceuta and Melina(제37조 내지 제38조)
Title VIII	최종규정(제39조 내지 제40조) 원산지 규정 수정, 운송 또는 보관 중인 물품 등

자료: 남풍우·안재진, 「EU와의 FTA 체결협상에 따른 범유럽 원산지 규정 운용의 특징 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 Pan-Euro의 원산지 규정을 살펴보면, Title III의 영역 요건 중 Article 13⁴³⁾에서 직접운

43) Article 13 Direct transport:

1. the preferential treatment provided for under the agreement applies only to products, satisfying the requirement of this Protocol, which are transported directly between the Community and Switzerland or through the territories of the other countries referred to in Article 3 and 4 with which cumulation is applicable. However, products constituting one single consignment may be transported other territories with, should the occasion arise, trans-shipment or temporary warehousing in such territories, provided that they remain under the surveillance of the customs authorities in the country of transit or warehousing and do not undergo operations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or any operation designed to preserve them in good condition.
Originating products may be transported by pipeline across territory other than that of the Community or Switzerland.
2. Evidence that the conditions set out in paragraph 1 have been fulfilled shall be supplied to customs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country by the production of:
 - (a) a single transport document covering the passage from the exporting country through the country of transit: of

송원칙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음

- Article 13에서는 일반적인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직접 운송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출국으로부터 경유국을 통과하는 전 구간을 포함하는 일관운송서류, 경유국의 세관당국에 의해 발행된 인증서(물품명세, 하역 및 재선적 일자, 선주명, 운송방법 등 기재)를 제출해야 함⁴⁴⁾
- Article 14에서는 전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EU에서는 전시(exhibition)를 위해 제3국으로 반출하거나, 전시 후 판매된 물품은 원산지 역내산으로 인정하고 특혜관세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즉,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직접운송원칙에 위반하여 특혜관세 배제가 원칙이지만 전시물품에 대해서는 특례를 인정하는 것임
- 다만 Article 14의 전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규정이 적용되려면 수출업자가 공동체 영역으로부터 전시회가 개최되는 국가로 물품을 위탁했다는 점, 물품이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에게 판매되었다는 사실, 전시회를 끝마친 후 곧바로 물품에 대한 변경 없이 반입된다는 점을 세관당국에 알려야 함. 즉 물품이 전시회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된 경우는 제외됨
- Article 14의 전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규정에 따르면, 적용대상이 되는 전시회는 무역, 산업, 농업 또는 도자기, 공적인 쇼 및 전시를 모두 포함하지만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판매점 또는 공장에서 외국 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 등은 제외됨. 그러나 이 규

(b) a certificate issu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country of transit:

(i) giving an exact description of the products;

(ii) stating the dates of unloading and reloading of the products and, where applicable, the names of the ships, or the other means of transport used; and

(iii) certifying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products remained in the transit country; or

(c) failing these, any substantiating documents.

44) Pan-Euro 원산지 규정, Article 11, Article 제1항 내지 제2항

정은 EU가 체결한 FTA에서는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EU-멕시코 FTA상 직접운송원칙

- ☐ EU-멕시코 FTA는 1997년도에 체결되었으며, 2000년도 7월부터 발효되었음
- ☐ EU-멕시코 FTA에서 채택한 원산지 규정은 Pan-Euro의 원산지 규정과 마찬가지로 원산지를 판단하는 원산지 결정규정(Rules of origin) 분야와 원산지의 적정 여부를 증명하고 확인하는 데 필요한 통관절차(Customs procedures) 분야로 나누어짐
- ☐ EU-멕시코 FTA에서의 원산지 규정을 별도의 Chapter로 구분하지 않고, 협정문 본문에 첨부된 부속서(Annex)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 ☐ 또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별도로 채택하면서 이를 부속서의 부록(Appendix)에 규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 ☐ 원산지 부속서는 8개의 Title로 구성되며, 각 Title 아래 약 40여 개의 Article을 두고 있음

〈표 IV-4〉 EU-멕시코 FTA 원산지 규정의 구성체계

Title I	정의 규정(제1조 정의)
Title II	원산지 물품의 정의 규정(제2조 내지 제11조) 일반조건, 누적조항, 완전획득, 충분한 공정 및 가공, 불충분공정 및 가공, 적용단위, 약세사리, 잔여부품 및 도구, 세트, 중립재 등
Title III	영역 요건(제12조 내지 제13조) 영역원칙, 직접운송
Title IV	관세환급 및 면제(제14조) 관세환급 및 면제
Title V	원산지 증명(제15조 내지 제29조) 일반조건, 원산지증명서 발급, 회계분리, 승인된 수출자,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서 제출, 분할수입,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지원서류, 불일치 및 오류 등
Title VI	행정협력(제30조 내지 제35조) 상호 협조, 원산지증명서의 검사, 분쟁해결, 형벌 및 벌금, 자유지역 등
Title VII	Ceuta and Melina(제36조 내지 제37조)
Title VIII	최종규정(제38조 내지 제40조) 원산지 규정 수정, 운송 또는 보관 중인 물품 등

자료: EU-멕시코 FTA

□ EU-멕시코 FTA상의 원산지 규정에서 직접운송의 원칙⁴⁵⁾은 Title III 영역 요건에 내용

45) Artículo 13 Transporte directo

1. El trato preferencial dispuesto en esta Decisión se aplicará exclusivamente a los productos que satisfagan los requisitos del presente anexo y que sean transportados directamente entre el territorio de la Comunidad y el de México (R.G. 1,2,TLCUE). No obstante, los productos que constituyan un único envío podrán ser transportados en tránsito por otros territorios con transbordo o depósito temporal en ellos, si fuera necesario, siempre que los productos hayan permanecido bajo la vigilancia de las autoridades aduaneras del país de tránsito o de depósito (R.G. 3,6,21,numeral 15 RCGMCE) y que no hayan sido sometidos a operaciones distintas a las de descarga, carga o cualquier otra destinada a mantenerlos en buen estado (R.G. 1,3, TLCUE) (R.G. 2,6,20,RCGMCE).
2. El cumplimiento de las condiciones contempladas en el párrafo 1 se podrá acreditar mediante la presentación a las autoridades aduaneras del país de importación de:
 - (a) un documento único de transporte al amparo del cual se haya efectuado el transporte desde el país de exportación a través del país de tránsito; o
 - (b) un certificado expedido por las autoridades aduaneras del país de tránsito que contenga:
 - (i) una descripción exacta de los productos;

을 두고 있으며, Pan-Euro의 원산지 규정과 비교해본다면 전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에 대한 내용이 없음

3) EU-칠레 FTA상 직접운송원칙

- ☐ EU와 칠레 FTA는 2002년에 체결되었고, 2003년 2월부터 발효되었음
- ☐ EU-칠레 FTA에서 채택한 원산지 규정은 Pan-Euro의 원산지 규정과 마찬가지로 원산지를 판단하는 원산지 결정규정(Rules of origin) 분야와 원산지의 적정 여부를 증명하고 확인하는데 필요한 통관절차(Customs procedures) 분야로 나누어짐
- ☐ 또한 EU-칠레 FTA에서의 원산지 규정도 협정문 본문에 딸린 부속서(Annex)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 ☐ 원산지 부속서는 8개의 Title로 구성되며, 각 Title 아래 약 40여 개의 Article을 두고 있음
- ☐ EU-칠레 FTA상 원산지 규정에서 직접운송원칙⁴⁶⁾은 Title III 영역 요건에 내용을 두고

(ii) la fecha de descarga y carga de las mercancías y, cuando corresponda, los nombres de los barcos u otros medios de transporte utilizados; y

(iii) la certificación de las condiciones en las que permanecieron las mercancías en el país de tránsito; o

(c) en ausencia de ello, cualesquier documentos de prueba.

46) ARTÍCULO 12 Transporte directo

1. El trato preferencial dispuesto por el presente Acuerdo se aplicará exclusivamente a los productos que satisfagan los requisitos del presente Anexo y que sean transportados directamente entre la Comunidad y Chile. No obstante, los productos que constituyan un único envío podrán ser transportados transitando por otros territorios con transbordo o depósito temporal en dichos territorios, si fuera necesario, siempre que los productos hayan permanecido bajo la vigilancia de las autoridades aduaneras del país de tránsito o de depósito y que no hayan sido sometidos a operaciones distintas de las de descarga, carga o cualquier otra destinada a mantenerlos en buen estado.
2. El cumplimiento de las condiciones contempladas en el párrafo 1 se podrá acreditar mediante la presentación a las autoridades aduaneras del país importador de:

있으며, Pan-Euro의 원산지 규정과 동일하게 전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에 대한 규정을 제13조⁴⁷⁾에 두고 있음

-
- (a) un documento único de transporte al amparo del cual se haya efectuado el transporte desde el país exportador a través del país de tránsito, o
 - (b) un certificado expedido por las autoridades aduaneras del país de tránsito que contenga:
 - (i) una descripción exacta de los productos,
 - (ii) la fecha de descarga y carga de los productos y, cuando corresponda, los nombres de los buques u otros medios de transporte utilizados, y
 - (iii) la certificación de las condiciones en las que permanecieron las mercancías en el país de tránsito; o
 - (c) en ausencia de ello, cualesquiera documentos de prueba.

47) ARTÍCULO 13 Exposiciones

1. Los productos originarios enviados para su exposición en un país distinto de la Comunidad o de Chile y que hayan sido vendidos después de la exposición para ser importados en la Comunidad o en Chile se beneficiarán, en su importación, de las disposiciones del presente Acuerdo, siempre que se demuestre a satisfacción de las autoridades aduaneras del país importador que:
 - (a) estos productos fueron expedidos por un exportador desde la Comunidad o desde Chile hasta el país de exposición y han sido expuestos en él;
 - (b) los productos han sido vendidos o cedidos de cualquier otra forma por el exportador a un destinatario en la Comunidad o en Chile;
 - (c) los productos han sido enviados durante la exposición o inmediatamente después en el mismo estado en el que fueron enviados a la exposición;
 - (d) desde el momento en que los productos fueron enviados a la exposición, no han sido utilizados con fines distintos a su presentación en dicha exposición, y
 - (e) los productos han permanecido bajo control aduanero durante la exposición.
2. Deberá expedirse o elaborarse, de conformidad con lo dispuesto en el Título V, un certificado de origen que se presentará a las autoridades aduaneras del país importador de la forma acostumbrada. En él deberá figurar el nombre y la dirección de la exposición. En caso necesario, podrán solicitarse otras pruebas documentales relativas a las condiciones en que han sido expuestos.
3. El párrafo 1 será aplicable a todas las exposiciones, ferias o manifestaciones públicas similares, de carácter comercial, industrial, agrícola o artesanal que no se organicen con fines privados en almacenes o locales comerciales para vender productos extranjeros.

〈표 IV-5〉 EU-칠레 FTA 원산지 규정의 구성체계

Title I	정의 규정(제1조 정의)
Title II	원산지 물품의 정의 규정(제2조 내지 제10조) 일반조건, 누적조항, 완전획득, 충분한 공정 및 가공, 불충분공정 및 가공, 적용단위, 약세사리, 잔여부품 및 도구, 세트, 중립재 등
Title III	영역 요건(제11조 내지 제13조) 영역 원칙, 직접운송, 전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
Title IV	관세환급 및 면제(제14조) 관세환급 및 면제
Title V	원산지 증명(제15조 내지 제29조) 일반조건, 원산지증명서 발급, 회계분리, 승인된 수출자,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서 제출, 분할수입,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입증 서류, 불일치 및 오류 등
Title VI	행정협력(제30조 내지 제35조) 상호 협조, 원산지증명서의 검사, 분쟁해결, 형벌 및 벌금, 자유지역 등
Title VII	Ceuta and Melina(제36조 내지 제37조)
Title VIII	최종규정(제38조 내지 제40조) 원산지 규정 수정, 운송 또는 보관 중인 물품 등

자료: EU-칠레 FTA

4) 한국-EU FTA 원산지 규정상 직접운송원칙

□ 한국-EU FTA는 제15장과 3개의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음

□ 직접운송원칙은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절 원산지 규정 중 제13조⁴⁸⁾에 규정되어 있음

48) 제13조 직접 운송

1. 이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 당사자 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 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관세당

〈표 IV-6〉 한국-EU FTA의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구성체계

제1절 원산지 규정(제1조~제13조)

- 일반 규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영역 요건, 직접운송

제2절 원산지 절차(제14조~제30조)

- 환급 또는 면제, 원산지 증명, 행정 협력을 위한 제도

제3절 세우타 및 벨리아(제31조~제32조)

제4절 최종규정(제33조~제34조)

부속서 목록

- 부속서 1: 부속서 2의 목록에 대한 소개 주석
- 부속서 2: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목록
- 부속서 2-가: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목록에 대한 부가규정
- 부속서 3: 원산지 신고서 문안
- 부속서 4: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자료: 한국-EU FTA

- 직접운송원칙의 내용을 보면, “이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 당사자 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 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국에 다음을 제출하여 제공된다.

가. 제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나. 수출 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

다.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 1)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 수단을 기재하는 것, 그리고
- 3)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단일 탁송화물 구성 제품에 대해서만 상황에 따라 제3국 경유를 허용하고 있음

○ 다만, 제3국 경유국 세관관할하에 있고, 원산지 변형이 발생할 수 있는 공정을 하지 않는 조건을 부여하고 있음

- 제3국 경유 시 직접운송원칙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입당사자가 관세당국에 ① 제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② 수출당사자에게 경유국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나 혹은 경우국의 관세당국이 제품의 정확한 설명과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하여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나. EU법상 직접운송원칙

- 유럽통합이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단계를 거쳐 1999년 단일통화(EURO)의 도입을 통하여 경제동맹(Economic Union) 단계로 발전함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원산지 제도에 있어서도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음
- EU의 원산지 규정은 종전에 품목별로 독립된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었으나, 1992년 새로 제정된 공통관세법에 흡수통합되었음
 - 공통관세법 제251조에 의하여 종전의 원산지 규정은 모두 폐지되었으나, 그 내용은 신법령에 거의 그대로 답습되었음
- 신관세법은 제22조 내지 제26조에서 비특혜원산지 규정을 두고, 제27조에서 특혜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음
- 관세법 집행규칙은 제35조 내지 제65조 및 부속서 9 내지 13에서 비특혜관세를, 제66조 내지 140조 및 부속서 14 내지 22에서 특혜관계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음

- EU의 원산지 규정 체계상 특이한 점을 살펴보면, 관세법령에서 특혜원산지 규정과 비 특혜원산지 규정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이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에서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령체계와 차이가 있음
- EU 관세법은 특혜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원산지 규정 설정근거만 두고 있음. 즉 양자 간 또는 다자간 협정에 의한 쌍방적 특혜 공여 시에는 관세법 집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⁴⁹⁾
- 따라서 특혜원산지 결정기준 내용에 속하는 직접운송원칙은 EU 관세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며, 양자 간 또는 다자간 협정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규정되고 있음

3. 중국

- 중국은 뉴질랜드, ASEAN, 칠레, 파키스탄, 싱가포르, 페루, 코스타리카, 홍콩, 마카오와 FTA를 체결하여 발효 중에 있음
- 각 FTA 협정조문을 살펴보면 구성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FTA 원산지 결정기준의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직접운송원칙은 모든 FTA 조항에 포함되어 있음

가. FTA상 직접운송원칙

1) 중국-동남아시아 자유무역구 원산지 규정상 직접운송원칙

-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동남아시아 FTA를 2003년 12월에 체결하였음. 이는 중국이 대외로 체결한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이며 본 협정은 2004년 1월에 정식으로 발효되었음. 주로 500여 종의 제품 제1장부터 제8장의 농산품에 관하여 감세를 실시하며

49) EU 관세법 제27조

2006년에 관세를 폐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중국-동남아시아 자유무역구는 중국이 제일 처음 설립한 자유무역구로, 인구로 계산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구이며 그 경제규모로 보면 유럽과 북미 자유무역구 다음인 제3의 경제자유무역구임
 - 개도국들이 형성한 제일 큰 자유무역구로서 18억명의 소비자와 2만억달러의 국내생산총액, 1만 2천억 달러의 무역총액을 가진 경제무역구임
- 중국-동남아시아 자유무역구 원산지 규정은 협정문 부속서 3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 직접운송원칙에 대한 내용도 규정되어 있음
- 원산지 규정 중 Rule 8에서 직접운송원칙(Direct Consignment)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직접운송원칙을 살펴보면, 수입제품이 동남아시아의 모국에서 직접 중국의 경내로 운수 시 혹은 모국의 회원국에서 기타 자유무역구 회원국의 경내를 거쳐 중국으로 직접 운수 시 제품의 원산지를 회원국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⁵⁰⁾

50) Rule 8: Direct Consignment

The following shall be considered as consigned directly from the exporting Party to the importing Party:

- (a) If the products are transported passing through the territory of any other ACFTA member states;
- (b) If the products are transported without passing through the territory of any non-ACFTA member states;
- (c) The products whose transport involves transit through one or more intermediate non-ACFTA member states with or without transshipment or temporary storage in such countries, provided that:
 - (i) the transit entry is justified for geographical reason or by consideration related exclusively to transport requirement;
 - (ii) the products have not entered into trade or consumption there; and
 - (iii) the products have not undergone any operation there other than unloading and reloading or any operation required to keep them in good condition

2) 중국-칠레 FTA상 직접운송원칙

- 중국-칠레 FTA는 중국이 동남아시아와의 FTA 체결 이후 단일국가와 맺은 최초의 FTA 협정이며 동시에 남미 국가와 맺은 첫 번째 FTA 협정임
- 중국-칠레 상품무역협정은 2004년 11월 18일부터 시작하여 10개월간 5차례의 협상을 통하여 2005년 11월 한국 부산에서 협정이 체결되어 2006년 10월 1일부터 발효되었음
- 중국-칠레 FTA 협정에서 두 나라는 세목 총액의 97%인 제품의 관세를 10년 내에 점차적으로 철폐하고 2006년 10월 1일부터 칠레는 중국 현지에서 생산된 5891종의 제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고 중국도 2806종의 칠레산 제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음
- 중국-칠레 원산지 규정은 FTA 협정문 제4장에 있으며, 제4장 제27조에서 직접운송의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제4장 제27조의 직접운송원칙에 따르면, 특혜관세조치가 인정되는 제품은 양국 간에 직접적으로 수송되는 제품이어야 하며, 물품의 보관을 위하여 환적 혹은 비환적이 비당사국에 의해 이루어졌을 때 비당사국에 물품이 유입된 이후 3개월 이내의 체류시간을 허용하고 있음
 - 이 경우 제품을 적재, 적하, 재적재, 포장, 패키징 혹은 좋은 상태를 유지하거나 수송에 필요한 여타의 작업을 제외하고 비당사국 지역에서 여하한의 공정 혹은 생산과정을 겪어서는 안됨
 - 그리고 이러한 사항에 부합되는지 여부는 수입국 세관당국에 비당사국의 관세서류 혹은 수입국 세관당국을 만족시키는 여타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증명할 수 있음

3) 중국-파키스탄 FTA상 직접운송원칙

- ☐ 중국-파키스탄 FTA는 2007년 7월에 체결되어 2008년 7월부터 발효되었음
- ☐ 원산지 규정은 FTA 협정문 제4장(Chapter)에서 규정을 두고 있음
- ☐ 중국-파키스탄 FTA의 완전생산기준에서 인증하는 역내 원산지 상품은 중국과 파키스탄의 영역 내에서 완전히 획득하였거나 생산한 상품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 완전생산기준에서 정의하는 수산물의 원산지 결정을 위한 자국 선박의 요건은 중국-칠레 FTA와 중국-아시아 FTA의 요건과 동일함
- ☐ FTA 협정문 제4장 원산지 규정 중 제19조⁵¹⁾에 직접운송원칙에 대한 규정이 있음
 - 직접운송제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파키스탄 외의 다른 국가지역을 거치지 않고 운송되어야 하며, 제3국을 거치게 되는 경우에는 제품을 적재, 적하, 혹은 좋은 상태를 유지하거나 수송에 필요한 여타의 작업을 제외하고 비당사국 지역에서 여하한 공정 혹은 생산과정을 겪지 않아야 함
- ☐ FTA 협정문 제4장 제23조에서는 원산지 증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수출국이 정한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의하여 이행절차가 협정문대로 이행되었다는 사실을 상대국에 증명할 수 있음⁵²⁾

51) 중국-파키스탄 FTA **Article 19 Direct Consignment** The following shall be considered as consigned directly from the exporting Party to the importing Party:

- (a) If the products are transported without passing through the territory other than China and Pakistan;
- (b) The products whose transport involves transit through one or more intermediate non-CPFTA countries with or without transshipment or temporary storage in such countries, provided that:
 - (i) the transit entry is justified for geographical reason or by consideration related exclusively to transport requirements;
 - (ii) the products have not entered into trade or consumption there; and
 - (iii) the products have not undergone any operation there other than unloading and reloading or any operation required to keep them in good condition.

52) 중국-파키스탄 FTA Article 23 Certificate of Origin A claim that products shall be accepted as

나. 국내법상 직접은송원칙⁵³⁾

- ☐ 중국의 원산지에 관한 최상위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임
 - 이 두 법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서 제정 반포하였음
 -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한다는 사실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실행조례는 국무원에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에서도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는 국가의 관련 원산지 규정에 따른다고만 규정하고 있음
- ☐ 구체적인 시행은 일반원산지 관리규정인 국무원이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원산지조례」, 그리고 특혜원산지 관리제도인 세관총서가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물품 특혜원산지 관리규정」에 의하고 있음
- ☐ 기존의 중국 원산지 규정은 수출과 수입으로 각각 나뉘어 불완전한 법령으로 존재하여 통합 정리될 필요가 있었음. 또한 관련 규정은 최종생산 또는 가공공정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고, 수입 원료나 부품의 일부나 전부를 가지고 중국 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거친 제품도 중국을 원산지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었음
-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4년 8월 18일 국무원 제61차 상무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원산지조례」를 통과시키게 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16호로 2005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 ☐ 개정원산지조례는 최혜국대우, 반덤핑 및 반보조금, 세이프가드, 원산지 표기관리, 국

eligible for preferential concession shall be supported by a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a government authority designated by the exporting Party and notified to the other Party to the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the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as set out in Annex II.

53) 조미진 외,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 규정 비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참조

가별 수량제한, 관세쿼터 등 비우대성 무역조치 및 정부조달, 무역통계 등 활동에 있어 수출입 원산지의 확정에 적용하게 되었음

- 특혜무역조치의 수출입 원산지 규정에 있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음
- 중국의 특혜원산지 규정은 FTA에서의 원산지 규정과 아·태무역협정(구 방콕협정)을 들 수 있음

- 정부구매법에서는 국산제품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국산제품을 판정하는 데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
 - 정부구매법에서는 ‘국산제품 공정과 서비스’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국무원의 관련규정의 집행에 비추어 실시한다’고만 하고 있음
 - 그러나 국무원이 현재 관련규정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여서 중국의 원산지 규정의 결함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 그리고 중국에는 특혜원산지 규정에 대한 법률이 없는 것이 특징임. 따라서 국내법상 직접운송원칙에 대한 법률은 없는 것으로 보임

4. 일본

- 일본은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아세안, 필리핀, 스위스, 베트남, 인도, 페루와 FTA를 체결하여 발효 중에 있음
- 전반적으로 일본은 원산지 규정을 중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일본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특혜, 비특혜를 막론하고 통일 원산지 규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현재 진행 중인 비특혜분야 통일 원산지 규정 제정 작업과정에서도 미국이나 EU와는 달리 조속한 타결을 주장하고 있음

- ☐ 일본의 원산지 규정은 교토협약에 마련된 원칙에 입각하고 있어 비록 엄격한 면은 있지만 비교적 명료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음
- ☐ 일본의 경우 반덤핑제소나 상계관세의 적용 등 보호무역조치를 가시적으로 취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원산지 판정과 관련한 분쟁사례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음

가. FTA상 직접운송원칙

1) 일-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The Agreement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Singapore for a New-Age Economic Partnership, JSEPA)

- ☐ 2002년 11월 30일 발효된 일-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은 본문 제3장, 부속서 II 및 II B에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음
- ☐ 본문 제3장 원산지 규정을 보면 용어의 정의, 일반적 원산지 결정기준, 특별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증명, 수입 전 원산지 결정 유권해석, 원산지 규정위원회로 이루어져 있음
- ☐ 부속서 II A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규정하고 부속서 II B에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일-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본문 제3장 원산지 규칙

- 용어의 정의(22조)
- 원산지 결정기준(23조~28조)
 - 일반적 원산지 결정기준(23조)
 - : 완전생산기준, 충분변경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 특별 원산지 결정기준(24조~28조)
 - : 자국관여기준, 미소재료취급, 단순공정, 직접운송원칙, 미조립물품의 취급
- 원산지 증명(29조~31조, 33조)
 - : 증명서 제출대상, 증명서 미제출 시 특혜배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기재내용·유효기간, 수출국의 원산지 확인 지원
- 사전회시(32조)
- 원산지 규정위원회(34조)

부속서 II 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부속서 II B 원산지증명서 구성항목

- 직접운송원칙은 제27조⁵⁴⁾에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27조에서는 ① 당해 타방의 체약국 영역으로부터 직송·수송되었거나, ② 환적 또는 일시 저장을 위해 1국 또는 2국 이상의 제3국 영역을 경유해 수송된 경우 환적 또는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 작업 이외의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 체약국의 제품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54) 일-싱가포르 FTA Article 27 Consignment Criteria the originating goods of the other Party shall be deemed to meet the consignment criteria when they are:

(a) transported directly from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or
 (b) transported through the territory or territories of one or more non-Parties for the purpose of transit or temporary storing in warehouse in such territory or territories, provided that they do not undergo operations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or operations to preserve them in good condition.

2) 일-멕시코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The Agreement between Japan and Mexico for a New-Age Economic Partnership)

- ☐ 일-멕시코 자유무역협정은 2002년 11월 교섭을 시작하여 2006년 체결되었고, 2007년 4월부터 발효되었음
- ☐ 일-멕시코 자유무역협정을 살펴보면, 본문이 총 18장과 177조로 구성되어 있고, 18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음
- ☐ 원산지 규정은 제4장에 두고 있으며, 제4장 원산지 규정 중 제35조⁵⁵⁾에 환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내용은 직접운송원칙에 해당됨
- ☐ 제35조 환적 규정에 따르면, ① 생산 후 쌍방 체약국의 구역 외에서 추가생산이나 작업이 이루어졌거나 ② 1국 또는 2국 이상의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저장되었던 경우에 당해 원산품이 지속적으로 제3국의 관세당국의 감독하에 없었을 경우에는 비원산지 제 품으로 보고 있음
- ☐ 일본 - 멕시코 FTA 환적 규정에는 수입국 세관에 대한 증거제시 규정이 있는 것이 특징임

55) 일-멕시코 FTA Article 13 Transshipment

1. An originating good shall be considered as non-originating, even if it has undergone production that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2 if, subsequent to that production, outside the Areas of the Parties, the good:
 - (a) undergoes further production, or operations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or any other operation necessary to preserve it in good condition or to transport it to the other Party; or
 - (b) does not remain under surveillance of the customs authorities in one or more non-Parties where it undergoes transshipment or temporary storage in those non-Parties.
2. Evidence that an originating good has not lost its originating condition by means of paragraph 1 above shall be provided to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3) 일-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The Agreement between Japan and Malaysia for a New-Age Economic Partnership)

- ☐ 일-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은 2003년부터 교섭을 시작하여 2006년 7월부터 발효된 협정임
- ☐ 일-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문은 본문 총 14장 15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7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음
- ☐ 원산지 규정은 제3장에 있으며, 제3장 32조⁵⁶⁾에 직접운송원칙에 대한 규정이 있음
- ☐ 제3장 32조 직접운송원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상대 체약국 영역으로부터 직접수송되거나 ② 환적 또는 일시 저장을 위해 제3국을 경유해 수송하더라도 당해 제3국에서 환적 또는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이외의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체약국 원산품으로 인정하고 있음

나. 국내법상 직접운송원칙

- ☐ 일본의 원산지 규정은 특혜분야(GSP)는 과세잠정조치법, 비특혜분야는 관세법과 부당경품및부당표시방지법에 의하여 주로 규율되어 오다가 최근 일본 최초로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특혜분야 원산지 규정이 이원화되었음

56) 일-말레이시아 FTA Article 32 Consignment Criteria

1. An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Country shall be deemed to meet the consignment criteria when it is :
 - (a) transported directly from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untry ; or
 - (b) transported through third States for the purpose of transit or temporary storage in warehp uses in such third States, provided that it does not undergo operations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or any other operation to preserve it in good condition
2. If the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Country does not meet the cosignment criteria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at good shall not be considered as the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Country.

- 일본 원산지 규정의 특징 중 하나는 EU나 한국과 달리 법규가 아닌 통달 또는 가이드라인 등 하위 행정규칙 의존도가 높다는 점임
- 일본의 원산지 관련법은 크게 통상법 분야와 경쟁법 분야로 나눌 수 있음
 - 통상법에는 관세법, 수출입거래법, 외국환관리법, 상공회의소법, 관세잠정조치법, 일-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이 있음
 - 경쟁법에는 농림물자의규격화및품질표시의적정화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부당경품류및부당표시방지법이 있음
- 특혜 규정에는 관세잠정조치법과 일-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이 해당되며, 비특혜 규정에는 나머지 법률들이 해당됨
- 관세잠정조치법상 원산지 규정은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상 특혜를 공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특혜제도 운영을 위하여 관세잠정조치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과세관계기본통달에서 상세한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음
- 직접운송원칙은 관세잠정조치법 시행령 5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혜수혜국가로부터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할 것, 운송상의 이유로 비특혜국가의 환적 및 임시조치의 경우 인정 규정, 전시물품에 대한 특례 규정, 세관에 대한 증거제시 규정 등이 있음

〈관세잠정조치법〉

- 특혜관세 적용대상국 등(법 8조~8조6)
- 원산지 결정기준(영 50조, 규칙 8~9조 및 별표)
- 원산지 인정방법(관세관계기본통달 68-3-7)
- 원산지증명서 제출 대상·발급시기·발급기관(영 51조)
- 원산지증명서 제출 시기(영 52조)
-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영 53조)
- 원산지 증명 용어정의, 유효성 인정기준 등(관세관계기본통달 68-3-6, 8, 9)
- 원산지증명서 서식(규칙 10조 및 별지)
- 자국관여증명, 누적가공증명(영 54조, 규칙 별지 2~3)
- 직접운송원칙(영 55조)

V.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가. FTA 협정 현황

- ☐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기준으로 46개국과 체결한 9건의 FTA가 발효 중임
- ☐ 주요국들의 FTA 협정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20개국과 체결한 14건의 FTA가 발효된 상태이며, EU는 2012년 현재 5개국과, 중국은 9개, 일본은 13개의 FTA 협정이 발효 중임

〈표 V-1〉 각국의 FTA 협정 현황

구분	FTA를 체결한 국가들
우리나라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미국	이스라엘, 캐나다, 멕시코, 요르단, 칠레, 싱가포르, 호주, 모로코, 바레인, 오만,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코스타리카, 페루,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EU	멕시코, 칠레, 페루, 한국, 남아프리카
중국	아세안,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코스타리카,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아세안, 필리핀, 스위스, 베트남, 인도, 페루

나. 각국의 FTA상 직접운송원칙

1) FTA 원산지 규정과 직접운송원칙의 구성

- FTA 협정에서 원산지 규정과 직접운송원칙의 위치를 살펴보면, EU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FTA 본문에 원산지 규정과 직접운송원칙 규정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와 미국은 대부분의 FTA에서 상품무역협정 부문의 원산지 규정(일부 FTA는 원산지 절차 포함)에 직접운송원칙 또는 환적 규정을 포함시키고 있음
 - 중국과 일본 또한 FTA 본문의 원산지 규정 장에 직접운송 규정을 둠
- 단,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가운데 한-EU FTA, 한-터키 FTA, 한-아세안 FTA에서는 의정서 또는 부속서 형식으로 원산지 규정과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미국도 예외적으로 ILFTA와 JFTA에서는 부속서 원산지 규정에 직접운송(imported directly) 규정을 두고 있음

〈표 V-2〉 각국의 FTA상 원산지 규정과 직접운송원칙의 구성

구분	FTA상 원산지 규정	FTA상 직접운송원칙 규정
우리나라	FTA 본문 - 단, 한-EU FTA, 한-터키 FTA, 한-ASEAN FTA: 의정서 또는 부속서	‘원산지 규정’ 또는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장(Chapter) - 단, 한-EU FTA, 한-터키 FTA: 의정서 원산지 규정(영역 요건) - 한-ASEAN FTA는 부속서 원산지 규정 및 부록
미국	FTA 본문 - 단, ILFTA, JFTA: 부속서	‘원산지 규정’ 또는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장(Chapter) - 단, ILFTA, JFTA: 부속서 원산지 규정
EU	부속서	부속서 원산지 규정(영역 요건)
중국	FTA 본문	원산지 규정
일본	FTA 본문	원산지 규정

2) 주요국의 FTA 직접운송원칙 내용

- 우리나라와 미국은 FTA에 직접운송 규정과 통과·환적 규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직접운송 규정은 제3국 관세당국의 통제 및 환적 관련 작업 이외의 공정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통과 및 환적 규정은 이와 내용이 유사하나 체약당사국 간에 직접 운송될 것을 명시하지는 않음
- 우리나라가 체결한 9개 FTA 가운데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한 체약상대국은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터키가 있으며, 직접운송 요건은 두지 않고 ‘통과’ 또는 ‘통과 및 환적 규정’을 둔 한-미 FTA, 한-칠레 FTA가 있음
- 직접운송 규정 가운데 ASEAN, 인도, 페루와의 FTA는 제3국에서의 거래 또는 소비를 금지하고, EFTA, EU, 터키와의 FTA는 탁송화물에 대한 추가 공정을 제한함
- 요약하면 우리나라는 FTA를 체결하는 국가에 따라서 직접운송 규정의 내용과 협정문 문구도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는 편임
 - 다만, 최근에는 통일된 규정을 사용하는 추세임
- 미국은 몇 FTA를 제외하고는, 주로 NAFTA의 통과 및 환적 규정을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음
 - FTA에는 제3국 관세당국의 감독 의무를 임의로 규정하되, 국내법에서는 제3국 관세당국의 감독 의무를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EU, 중국, 일본의 직접운송원칙은 직접운송 요건과 비당사국 경유한도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EU와 중국, 일본의 직접운송원칙은 수출당사국에서 발송한 물품이 비당사국을 거치지 않고 수입당사국에 운송될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운송 도중에 비당사국 영역에서 환적 등 특정 행위만 이루어지고 다른 작업이 없는 경우에는 비당사국 경유 운송이 인정될 수 있음
- EU와 일본의 직접운송원칙은, 당사국 ‘경유’ 물품에 특혜가 부여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비당사국 세관의 통제하에서 하역, 재선적하거나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이외의 어떠한 가공이나 작업도 없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의 직접운송원칙은 이러한 점을 더욱 구체화하여 제3국 경유 사유를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한정하고, 제3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좀 더 보수적인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 주요국의 대표적인 FTA의 직접운송원칙 관련 규정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V-3〉 각국의 주요 FTA의 직접운송원칙 내용

구분	주요 FTA의 직접운송원칙
미국 (NAFT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이 계약당사국 외의 영역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물품을 보존 또는 운송을 위한 작업 이외에 추가적으로 생산을 거치거나 다른 공정을 거친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음
EU (Pan-Euro 원산지 규정)	1. FTA 특혜대우는 양 당사자 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됨 - 그러나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음 - 다만, 제3국 관세당국의 감독하에 있어야 하며,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함 2. 1항의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당사자에게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관세당국에 아래의 내용을 제출하여 제공됨 (a) 제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b) 수출당사자로부터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c)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①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②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 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것 ③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증명하는 것

〈표 V-3〉의 계속

구분	주요 FTA의 직접운송원칙
중국 (중국-파키스탄 FTA)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당사국에서 수입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봄 (a) 제품이 수출상대국에서 직접 운송된 경우 (b) 제품이 제3국을 거치게 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i) 지역적 이유나 운송상 필요로 인하여 경유하는 경우 (ii) 제품은 유통이나 소비를 이유로 유입되지 않아야 함 (iii) 제품은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함
일본 (일본-싱가포르 FTA)	다음의 경우 체약국의 원산품으로 인정 – 상대 체약국 영역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경우 – 환적 또는 일시 저장을 위해 제3국을 경유해 수송하더라도 당해 제3국에서 환적 또는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이외의 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

다. 각국의 국내법상 직접운송원칙 비교

1) 법률 체계

-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국내법에 특혜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는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별도의 법률인 FTA 관세특례법을 두어 새로운 FTA가 체결되면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음
 - 미국의 특혜원산지 규정은 연방 관세법에 규정함
 - EU는 특혜원산지 규정 설정근거만 EU 관세법에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중국은 원산지 규정과 직접운송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국내규정이 없음
 - 일본은 특혜원산지 규정에 대하여 관세잠정조치법에 내용을 두고 있으나, FTA 협정들이 체결되기 시작하면서 특혜원산지 규정이 이원화되었음
 - 일본 원산지 규정은 법규가 아닌 통달 또는 가이드라인 등 하위 행정규칙의 의존도가 높은 것이 특징임

-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FTA 이행을 위한 별도의 법률⁵⁷⁾을 둔 국가는 우리나라뿐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우리나라는 관세를 양허하기 위한 특혜원산지 가운데 FTA 협정관세는 FTA 관세특례법을 따르고, 기타 특혜관세는 관세법에 따른 원산지 절차를 따름
- 따라서 우리나라는 FTA 관세특례법에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원칙 규정을 두고 있으며, FTA별 원산지 규정은 시행규칙 별표로 첨부됨
- 「FTA 관세특례법」 제9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을 두고, FTA 관세특례 고시에 원산지 확인 방법을 규정

〈표 V-4〉 각국의 국내법상 원산지 규정

구분	특혜원산지 법률	직접운송원칙 규정
우리나라	FTA 관세특례법	「FTA 관세특례법」 제9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미국	별도의 법령은 없음 - 연방관세법에 FTA별로 장(Chapter)을 둠	별도의 법령은 없음 - 연방관세규정 본문 또는 부속서 원산지 규정에 포함
EU	- EU 관세법 제27조, EU 관세법 집행규칙 제66조 내지 140조, 부속서 14부터 22에서 특혜관세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음 - EU 관세법은 특혜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없으며, 원산지 규정 설정근거만 두고 있음 - 각국과의 협정을 통해 적용되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며, 각국과의 협정을 통해 적용하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중국	구체적인 국내규정이 없음	구체적인 국내규정이 없음
일본	관세잠정조치법에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상 특혜를 공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관세잠정조치법 시행령 제55조

57)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협정관세 적용 신청, 원산지 증빙서류의 보관 및 제출,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계약상대국별 원산지 조사 방법, 벌칙 등을 규정함

- 한편, 미국은 관세 관련 법령인 19USC에 일괄적으로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규정을 두고, 하위 연방규정에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함
 - 별도의 FTA 특혜원산지 적용을 위한 법은 아니지만, 19USC 및 19CFR에 부속서 또는 본문으로 각 FTA에 따른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음
 - 19CFR Chapter 10에 GSP, FTA 등 특혜관세 프로그램에 따른 원산지 규정을 둠

2) 내용

-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국가들과 달리 FTA 이행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두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직접운송원칙을 FTA 관세특례법에 규정함
 - FTA가 체결될 때마다 해당 원산지 규정을 시행규칙 별표로 삽입하여 체약상대국별 원산지 규정에 직접운송원칙이 포함됨
- 내용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직접운송원칙을 준수하되, 각 협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원산지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됨
 - 이에 대한 예외로 비당사국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장치되는 경우 공정을 제한하고 관세당국의 감독하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직접운송 요건을 인정함
- 미국은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원칙을 연방관세법(19USC)에 각 FTA별로 원산지 규정을 포함시킴
 - 각 FTA별로 재무성시행령에서 원산지 규정을 본문 또는 부속서로 담고 있음
- 일본은 관세잠정조치법 시행령에 직접운송원칙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원산지 규정은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상 특혜를 인정하는 규정임. FTA를 체결한 국가의 특혜원산지 규정은 FTA 규정을 적용함

- 관세잠정조치법 시행령에서는 직접운송원칙, 운송상의 이유로 비특혜국가의 환적 및 임시조치의 경우 인정 규정, 전시물품에 대한 특례 규정, 세관에 대한 증거제시 규정 등을 두고 있음

〈표 V-5〉 각국의 국내법상 직접운송원칙 비교

구분	국내법의 직접운송원칙
우리나라	－ FTA 관세특례법에 일반적인 직접운송원칙을 규정
미국	－ FTA에 추가하여 입증서류, 허용 작업 범위의 예시를 상세히 규정 (연방관세법에 각 FTA 원산지 규정을 둠)
EU	없음
중국	없음
일본	－ 관세잠정조치법상 원산지 규정은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상 특혜를 인정하는 규정이며, FTA를 체결한 국가의 특혜 원산지 규정은 FTA 규정을 적용 － 관세잠정조치법 시행령에는 직접운송원칙, 운송상의 이유로 비특혜국가의 환적 및 임시조치의 경우 인정, 전시물품에 대한 특례 규정, 세관에 대한 증거제시 규정 등을 규정

라. 각국의 FTA별 직접운송원칙 비교

- 우리나라는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한 체약당사국 가운데 대략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에 따라 내용이 상이하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① 관세당국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한-싱가포르 FTA, 한-ASEAN FTA, 한-인도 CEPA, 한-페루 FTA는 직접운송 규정을 두되, 경유운송에 대한 입증 책임을 명시하고 경유국에서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 다소 엄격하게 규정함
 - ② EFTA, EU 및 터키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탁송화물’에 대해 비당사국의 경유 또는 환적을 허용하고 있고, 비당사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하는 서류로만 경유운송을 입증 하도록 하고 있음
 - ③ 미국과 칠레와 체결한 FTA의 직접운송원칙은 당사국 간에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명시하지 않지만, 경유국 관세당국의 감독과 허용 범위의 공정을 거치는 조

건하에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함

- 미국은 대부분의 FTA에서 NAFTA의 통과 및 환적 규정을 기초로 하여 직접운송원칙에 대한 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크게 3가지, 제3국에서의 거래 또는 소비를 금지하는 직접운송 규정과, 통과 및 환적, 제3국 운송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EU의 각 국가와의 FTA상의 직접운송원칙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직접운송원칙에 대한 내용이 유사하며, Pan-Euro 원산지 규정과 칠레와의 FTA에서는 전시물품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중국의 각 국가와의 FTA상의 직접운송원칙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동남아 FTA에서는 FTA 특성상 수출국 외의 동남아 회원국가들을 통하여 운송된 경우에도 직접운송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중국-칠레 FTA의 경우 ① 물품보관을 위해 환적이나 비환적이 비당사자국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3개월의 체류시간을 허용하고 있는 점, ② 수입국 세관당국에 비당사국의 관세서류 혹은 수입국 세관당국을 만족시키는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증명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③ 전시회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점이 특징적임
- 일본의 각 국가와의 FTA상의 직접운송원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기본적인 직접운송원칙의 내용을 담고 있고, 다만 멕시코와의 FTA의 경우에는 FTA 본문 제35조 환적규정에서 직접운송원칙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국 세관에 대한 증거제시 규정을 두고 있음

〈표 V-6〉 각국의 FTA별 직접운송원칙 비교

구분	FTA별 직접운송원칙	
우리나라	한-싱가포르 FTA 한-ASEAN FTA, 한-인도 CEPA, 한-페루 FTA	직접운송 규정 - 제3국에서의 거래 또는 소비 금지(한-싱가포르 FTA 제외)
	한-EFTA, 한-EU FTA, 한-터키 FTA	직접운송 규정 - 탁송화물에 대한 작업 제한
	한-칠레 FTA, 한-미 FTA	통과 및 환적 규정 - 직접운송 의무를 명시하지는 않음
미국	ILFTA, JFTA	직접운송 규정 - 제3국에서의 거래 또는 소비 금지
	BFTA, MFTA, OFTA, PTPA, NAFTA, CFTA, CAFTA-DR, UKFTA, CTPA, PATPA	통과 및 환적 규정 - 직접운송, 제3국 관세당국 감독 의무는 임의로 규정
	SFTA, AFTA	제3국 운송 규정 - 제3국 관세당국 감독 의무 없음
EU	Pan-Euro 원산지 규정	- 원산지 규정 제14조에서 전시물품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EU-멕시코 FTA	- EU의 일반적인 직접운송원칙 내용과 동일
	EU-칠레 FTA	- 원산지 규정 제13조에서 전시물품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한국-EU FTA	- EU의 일반적인 직접운송원칙 내용과 동일
중국	중국-동남아 FTA	- 중국의 일반적인 직접운송원칙 내용과 동일 - 다만, 동남아 FTA 특성상 수출국 외의 동남아 회원 국가들을 통하여 운송된 경우에는 직접운송으로 본다는 내용이 특징임
	중국-칠레 FTA	- 중국의 일반적인 직접운송원칙 내용과 동일 - 다만, 물품보관을 위해 환적이나 비환적이 비당사자국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3개월의 체류시간을 허용 - 또한 전시물품에 대한 특례규정이 제28조에 있음
	중국-파키스탄 FTA	- 중국의 일반적인 직접운송원칙 내용과 동일
일본	일본-싱가포르 FTA	- 일본의 일반적인 직접운송원칙 내용과 동일
	일본-멕시코 FTA	- 수입국 세관에 대한 증거 제시 규정이 있음
	일본-말레이시아 FTA	- 일본의 일반적인 직접운송원칙 내용과 동일

2. 시사점

가. 주요국의 FTA상 직접운송원칙의 특징

- 주요국들의 직접운송원칙을 살펴보면, 크게 유럽형과 미주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 EU, 중국, 일본은 유럽형에 속하며, 직접운송요건과 비당사국 경유 한도를 함께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은 일부 FTA를 제외하고, 경유요건만을 둬으로써 유럽형보다 완화된 직접운송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EU, 중국, 일본은 유럽형에 속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비당사국 경유 한도 내용에 있어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 EU와 일본은 당사국 경유 물품에 특혜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비당사국 세관의 통제하에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이외의 어떠한 가공이나 작업이 없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제3국 경유 사유를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한정하고, 제3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미주형 직접운송 규정은 직접 운송될 것을 명시하지 않으므로, 수출 당시 수입당사국을 최종 목적지로 하여 발송할 필요가 없고, 수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당사국에서 수출해 비당사국 보세구역에 장치했다가 구매자가 나타나면 그때 계약해 수입당사국으로 운송한 경우에도 특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형과 구분됨⁵⁸⁾
 - 그렇지만 비당사국 경유 물품에 특혜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세관의 통제하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의 어떠한 가공 또는 작업도 없어야 한다는 점은 유럽형과 동일함

58) 최영훈, 「한·미 FTA 이해- 직접운송원칙(1)」, 주간 『관세무역』 통권번호 제1531호, 2012. 11.

- 우리나라는 직접운송원칙에 대한 특별한 유형이 있지 않고, 체결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고 있음

나. 주요국의 국내법상 직접운송원칙의 특징

- 주요국들의 국내법상 원산지 규정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국가 중 우리나라, 미국, 일본에서 특혜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FTA 이행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둔 국가는 우리나라뿐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우리나라는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별도의 법률인 FTA 관세특례법을 두고, 새로운 FTA가 체결되면 별도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은 연방관세법에 각 FTA별 특혜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음
 - 일본은 특혜원산지 규정을 관세잠정조치법에 두고 있었으나, FTA 협정들이 체결되기 시작하면서 특혜원산지 규정이 이원화되었음

다. FTA 직접운송원칙 규정의 일관성

- 주요국들의 직접운송원칙 규정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 FTA의 직접운송원칙은 상대적으로 규정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행정에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직접운송 규정들을 살펴보면, 계약당사국별로 협정문 규정 내용의 차이가 크게 나고 있음
 - －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을 제한하거나 관세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의무 규정, 제3국 관세당국의 감독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에 관해서도 일관된 규정을 찾아보기 어려움
 - FTA 관세특례법에서도 FTA별로 허용작업 또는 제3국 경유의 서류, 입증서류 요건 등이 상이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행정에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의 경우 NA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적 조항을 중심으로 미국이 체결한 FTA들에서는 직접운송원칙에 대한 통일된 협정문 문구를 사용하고 있음. 또한 미국 국내법인 연방관세법에서는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의 범위나 입증서류에 대하여 상세하게 예시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FTA의 직접운송원칙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음
- EU의 경우에도 Pan-Euro 특혜원산지 규정을 모델로 하여 FTA를 체결함에 있어 기초로 삼음으로써 EU가 체결한 FTA들은 원산지 규정에 대하여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가 앞으로 체결할 FTA 특혜원산지 규정에 있어서는 계약상대국이 취하고 있는 원산지 규정의 유형에 수동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직접운송에 대한 일관된 원칙을 세워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기존에 체결된 FTA상 직접운송원칙의 일관된 행정을 위하여, 각 FTA별로 국내법 규정에 대한 상세한 예시 또는 범위를 명시하여 적용상의 혼란을 줄이고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라. 우리나라와 미국의 직접운송원칙 적용 사례 정리

- 최근에 한-EU 관세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세창고 거래에 대한 직접운송 적용 여부를 위주로 살펴봄
-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와 미국의 해석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는 한-EFTA FTA의 적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세창고 인도조건의 거래를 인정하지 않으나, 미국은 대부분의 FTA에서 인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FTA의 직접운송원칙을 집행하기 위해 FTA 관세특례법의 이행고시와 처리 지침을 두고 있음
- FTA 관세특례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직접운송 여부에 대한 원산지 확인 방법은 운송서류의 적출항과 목적항이 체약당사국인 경우로서, 제3국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에 직접운송 요건을 인정함
- 적출항이 체약당사국이 아닌 경우에는, 컨테이너 봉인 번호 등 물품의 동일성과 제3국의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었음을 관세당국이 확인한 증명서에 의해 확인함
 - 환적 증명서류 사례로 홍콩상의에서 발행하는 환적원산지증명서, 일본세관이 발행하는 적려허가통지서 등이 있음
- 우리나라는 경유운송을 FTA 관세특례법에서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되었거나 일시 장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되, 한-ASEAN FTA와 같이 별도로 ‘지리적 이유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제한하는 경우는 그에 따르도록 함
- 따라서 한-ASEAN FTA의 해석에 있어서 ‘지리적 이유 또는 운송 요건에 해당되는 경유’에 대해서만 제3국 운송을 허용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보세창고도 거래는 제3국에서 물량 조정 또는 안전재고의 활용을 위한 보관 목적의 일시 장치로 보아 지리적 이유 또는 운송 목적의 경유로 인정하지 않음
 - 또한 미국 상표권자의 방침에 따른 관계회사의 부득이한 제3국 경유 또한 지리적 이유 또는 운송 목적의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관세청의 회신이 있음
- 그러나 FTA에서 별도로 경유 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제3국 공정의 범위만을 명시한 한-EFTA FTA와 한-EU FTA의 해석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 구매자 또는 최종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3국의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일시 장치된 경우 한-EFTA FTA는 제3국에서 혼재되었다 하더라도 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되거나 제3국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있었음이 입증되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함
- ☐ 한-EU FTA의 협정관세 적용은 이러한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 한편, 미국은 대부분의 FTA에서 통과 및 환적 규정을 두고 있고, 제3국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환적 관련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보세창고 인도조건도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함
- ☐ 직접운송 요건을 명시한 ILFTA와 직접운송 요건과 통과 및 환적 규정을 둔 DR-CAFTA에서도 보세창고 거래를 단순 경유로 인정함
 - 제3국에서의 컨테이너 분리 및 혼재 작업을 환적 관련 작업으로 인정함
- ☐ FTA 규정에 제3국 관세당국의 감독 의무가 없더라도, 19USC 또는 19CFR 규정에 따른 직접운송 요건만 충족한 경우라면 제3국 경유에 대해 완화된 입장을 취하고 있음

마. 탁송화물 분리에 대한 직접운송원칙의 적용

- ☐ 최종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물품의 제3국 경유를 직접운송원칙 범위 내로 인정할 것 인지에 대한 문제가 최근 한-EU FTA와 관련하여 관세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음
 - 보세창고 거래와 같은 최종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물품에 대한 탁송화물 분리작업을 제3국에서의 운송상 이유로 보아 직접운송에 해당되도록 인정하자는 것이 EU의 요구사항임
- ☐ 탁송화물의 분리는 현재 한-EFTA FTA에서는 허용되고 있지만, 한-EU FTA에서는 인정되고 있지 않음

- 우리나라의 해석 사례에 따르면, 목적지 또는 수하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3국에 일시 보관되는 경우는 제3국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있더라도 지리적 또는 운송 목적의 경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임
- 만약, EU가 요구하는 대로 직접운송 요건에 대해 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검증 규정을 도입하는 경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러한 거래 유형에 대한 검증 등의 행정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 그러나 탁송화물 분리에 대한 직접운송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다양한 물류체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FTA의 근본 취지인 국제무역거래의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게다가 탁송화물 분리가 직접운송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관세특혜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제거래당사자들에게는 물류비용을 상승시키고 이는 물품 가격에 반영됨으로 인하여 FTA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들도 있음
- EU의 요구대로 한-EU FTA에서 탁송화물 분리를 직접운송으로 인정하기로 결정된다면, FTA 문구 또는 국내법에 이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가 앞으로 체결하게 될 FTA에서 이러한 논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FTA 규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임
- 향후 체결될 FTA에서 보세창고 거래를 직접운송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 한-아세안, 한-인도, 한-페루와의 FTA처럼 직접운송규정에 제3국에서의 거래 또는 교역, 소비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을 넣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FTA활용 실무매뉴얼』, 2011. 1.
- 한국원산지정보원, 『NAFTA 원산지 규정』, 2009. 5.
- 남풍우 · 안재진, 「EU와의 FTA 체결협상에 따른 범유럽 원산지 규정 운용의 특징 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무역학회지』, 제32권 제4호, 2007.
- 안응린, 「EU의 FTA 원산지 규정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8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07.
- 이영달, 「특혜무역협정의 직접운송 규정에 대한 고찰」, 『관세와 무역』, 2012
- 이영수 · 권순국, 「FTA 원산지 규정상의 직접운송원칙에 관한 연구」, 2012
- 조미진 · 여지나 · 김민성,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 규정 비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대외정책연구원, 2008
- 정순태, 「FTA 특혜원산지 규정의 문제점과 조화」, 2012
- 최영훈, 「한 · 미 FTA 이해- 직접운송원칙(1)」, 주간 『관세무역』 통권번호 제1531호, 2012. 11.
- 최홍석 · 이영달, 『FTA 시대 원산지 이론과 실무』, 2011
- EC Customs Code Committee Origin Section, Working Document(TAXUD/1184111/12), 2012. 8.
- Ernst & Young, *Trade Watch*, Volume 12, Issue 1, March 2013
- 세계관세기구, <http://www.wcoomd.org>
- 미국 관세청, <http://www.cbp.gov/>
- 미국 무역대표부, <http://www.ustr.gov/>

EU위원회, <http://ec.europa.eu/trade/>

중국 재무성, FTA Network, <http://fta.mofcom.gov.cn/>

일본 외무부, <http://www.mofa.go.jp/policy/economy/fta/index.html>

관세연구 13-01

주요국의 자유무역협정상의 직접은송원칙 조사

2013년 9월 23일 인쇄

2013년 9월 30일 발행

저 자 정재호 · 김정아 · 김미영

발행인 옥동석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고려씨엔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ISBN 978-89-8191-659-6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